第268回國會 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臨時會・閉會中)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7月12日(木)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3.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8.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9.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10.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1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1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13.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1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1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1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1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9. 選擧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8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선거연령하향(만18세)조정에 관한 청원
82. 재외국민참정권회복에 관한 청원
8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8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85.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8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8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88.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89.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
90.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9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
9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國民投票法中改正法律案
123. 國民投票法 일부개정법률안
124.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1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 개정에 관한 청원
126. 政黨法 一部改正法律案
127. 政黨法 일부개정법률안
1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3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35.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36. 政治資金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37.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소위원회 구성의 건

審査된案件

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영숙・배일도・김영덕・김충환・허태열・나경원・김정훈・장윤석・박순자・유정복・이계진 의원 발의) ····· 14
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최철국・김현미・정문헌・구논회・백원우・권선택・이근식・김석준・김영덕・유기준・정성호・김희선・김태홍・정청래・이목희・김춘진・최재천・김동철・홍재형・강기정・이영호・심재철・노웅래・선병렬・최용규・유시민・정화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0114) ····· 14
3.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박기춘・조성래・김선미・노영민・원혜영・안병엽・최인기・심재덕・유정복・조경태・신국환・이근식・오제세・문석호・김원웅・우제항・문병호 의원 발의) ····· 14
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박찬숙・강창일・김재홍・정성호・유시민・김원웅・박병석・이종걸・이상경・노영민・최용규・이화영・염동연・김부겸・이시종・이근식 의원 발의) ····· 14
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정성호・박찬숙・이원영・정문헌・정청래・김원웅・최인기・류근찬・강기정・김형주・심재덕・이미경・노현송・최용규・이철우・노웅래・이계안・송영길 의원 발의) ····· 14
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시종・오제세・유필

우・지병문・양승조・강길부・권선택・정성호・이철우・신중식・안상수・박기춘・구논회・류근찬・선병렬・박상돈・최재성・김형주・장복심・최용규・서재관・노현송・박재완・김양수・김태홍・김원웅・이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0202) ····· 14
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유시민・김기석・김동철・노현송・이철우・김선미・조성래・김형주・신기남・서갑원・김현미・박병석・한화갑 의원 발의) ····· 14
8.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구논회・김우남・김원웅・김태년・김태홍・노영민・노현송・문석호・박상돈・백원우・복기왕・신중식・심재덕・오영식・오제세・원혜영・유선호・윤호중・이광철・이기우・이근식・이상경・이원영・이은영・임종석・장경수・장향숙・정성호・제종길・조경태・조정식・주승용・최용규・최재성・최재천 의원 발의) ····· 14
9.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박승환・정문헌・박형준・황우여・신중식・정병국・이상경・이영호・김태환・이상득・박계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0232) ····· 14
10.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이은영・이근식・홍미영・조성래・오영식・선병렬・정청래・이미경・김태홍・장경수・안민석・김원웅・김재원・박명광・원혜영・정성호・송영길・최재성・노현송・유선호・유시민 의원 발의) ····· 14
1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심재덕・박세환・김영숙・이군현・정몽준・이해봉・박재완・진수희・배일도・이근식・김영춘・이인기・김정훈・허태열・허천・정문헌・김우남・문학진・고진화・이강두 의원 발의) ····· 15
1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고진화・권오을・권철현・김명주・김형오・맹형규・박승환・박형준・안경률・안명옥・안홍준・원희룡・유승민・이성권・정문헌・정화원・정병국・주호영・진수희・진영・최구식 의원 발의) ····· 15
13.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명규・이군현・배일도・황진하・고경화・박종근・김재경・박순자・이인기・김문수・김정훈・임태희・이재오・박성범・박계동・이상득・송영선・김애실・김석준・이해봉・권영세・정문헌・박창달・최병국・홍문표・허천・고흥길・김재윤・김기현・김맹곤・김재원・장복심・박혁규 의원 발의) ····· 15
1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심재덕・강봉균・강창일・권선택・김기석・김낙성・김명주・김문수・김선미・김성곤・김영춘・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현미・김희선・노웅래・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순자・박찬석・변재일・서재관・송영길・신국환・신기남・신학용・안민석・안병엽・양승조・염동연・오제세・우제창・원혜영・유승희・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경숙・이계안・이계진・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락・이상배・이시종・이용희・이은영・이재창・이호웅・임종석・장복심・정덕구・정몽준・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최규식・최용규・최재성・최철국・홍미영 의원 발의) ····· 15
1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김종률・이해봉・김태환・노웅래・이혜훈・이인기・황우여・고진화・이재창・김영춘・이시종・박세환・유기준・박성범・엄호성・허태열・서재관・안상수・유승민・안경률・권오을・정두언・공성진・정성호・김재홍・유필우・박재완 의원 발의) ····· 15
1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박계동・엄호성・서재관・안병엽・유승희・강길부・최인기・윤원호・오제세 의원 발의) ····· 15
1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박종근・전여옥・신상진・고경화・엄호성・이윤성・심재철・김석준・김충환・이경재・정병국・류근찬・안상수・김재원 의원 발의) ····· 15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한광원·이시종·심재덕·박찬석·박찬숙·김선미·이영호·조일현·서병수·조경태·신학용·정봉주·이원영·김태홍·강길부·노웅래·우제창 의원 발의) ····· 15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신기남·정봉주·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박찬숙·선병렬·김춘진·주승용·임종석·김명자 의원 발의) ····· 15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이재웅·심재엽·김재원·김영숙·정두언·안경률·김덕룡·정갑윤·이진구·심재철·정병국·이승희·신상진·이종구·맹형규·이인제·김충환·박진·이혜훈·최병국·정형근·김문수·엄호성·홍준표·이군현·박성범·진영·김희정·유기준·고조흥·공성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52) ····· 1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윤건영·이계경·엄호성·나경원·박순자·박찬숙·이혜훈·이주호·안경률·김정훈 의원 발의) ····· 15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배일도·박계동·전여옥·배기선·최인기·황우여·이주호·심재철·정병국·진수희·김재원·김광원·정희수·신상진·정화원·김충환·최경환·이혜훈 의원 발의) ····· 15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황우여·엄호성·김정권·정병국·이해봉·안상수·김재원·이혜훈·권경석·권오을·고흥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8) ····· 16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김정권·이해봉·심재철·김종률·윤건영·신상진·이주호·정병국·나경원·노현송·엄호성 고조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7) ····· 16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강창일·김재홍·홍미영·조성래·장복심·박기춘·양형일·지병문·이재창·원혜영·서병수·김무성·고흥길·이영순 의원 발의) ····· 16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김형오·심재철·이인기·정병국·유기준·엄호성·장윤석·김광원·박재완·안상수·황우여·안병엽·권영세 의원 발의) ····· 16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선·엄호성·김재윤·노현송·이해봉·황우여·이화영·이시종·심재철·이광철·윤원호·안민석·이미경·임종인·김재홍·이영순 의원 발의) ····· 16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김한길·이낙연·천영세 의원 외 159인 발의) ····· 16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김성조·김재경·박희태·안상수·엄호성·유기준·유승민·윤건영·주호영·홍문표·황우여 의원 발의) ····· 16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해봉·엄호성·박재완·김재원·정진섭·곽성문·박상돈·윤건영·박성범·공성진·고경화·박세환·이인기·나경원·신상진·정병국·안경률·김무성·김충환·유승민·안상수·김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99) ····· 16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진수희·정병국·이방호·안경률·박재완·심재엽·김기춘·김재원·유정복·이군현 의원 발의) ····· 16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발의)(이재오 의원 외 125인 발의)(의안번호 4101) · 16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공성진·김재원·김태년·김효석·박재완·박찬숙·신중식·안병엽·엄호성·유기준·이근식·이영호·임해규·주호영·지병문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8) ····· 16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계경·김정권·이해봉·임태희·이성구·주성영·임해규·공성진·김충환·주호영·안병엽·박찬숙·박재완·엄호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9) ····· 16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박세환·심재철·안상수·장윤석·황우여·이인기·임해규·배일도·박계동·이경재 의원 발의) ····· 1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정갑윤·유기준·전여옥·김충환·김정권·안경률·강재섭·배일도·이주호·이인기 의원 발의) ····· 1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강창일·김선미·박기춘·변재일·양형일·우제창·원혜영·이시종·조성래·최규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226) ····· 16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발의)(이재오 의원 외 124인 발의)(의안번호 4272)· 16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공성진·김석준·김영선·김태환·박재완·박형준·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계경·이성권·이인기·이해봉·정갑윤·최구식·황우여 의원 발의) ····· 16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장경수·노영민·한광원·박찬석·유승희·박기춘·정청래·제종길·김재윤·우원식 의원 발의) ····· 1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김광원·이계경·곽성문·임인배·이영호·황진하·김영선·신국환·이시종·김성조·심재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485) ····· 16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선미·김원웅·김재윤·박상돈·신학용·유승희·이영호·제종길·최재성·한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487) ····· 16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장경수·박기춘·장복심·엄호성·이인기·정성호·박상돈·이경재·정화원·제종길 의원 발의) ····· 17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임종석·장향숙·이인영·홍미영·문병호·최성·최용규·홍재형·김덕규·박기춘·이미경·한병도·최재성·노영민·김선미·윤원호·김춘진·김현미·이시종·김교흥·김낙순·정청래 의원 발의) ····· 17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민 의원 외 141인 발의)(의안번호 4626)· 17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무성·엄호성·김태년·주성영·정문헌·양형일·황우여·박상돈·박세환·정동채·안상수·이인기·고조흥·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8) ····· 17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재윤·정병국·박상돈·김종률·엄호성·서재관·안병엽·강기정·이시종·홍창선·염동연·변재일 의원 발의) ····· 17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구논회·김동철·김재윤·박상돈·심재덕·우윤근·이시종·이인기·장복심·홍재형 의원 발의) ····· 17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강창일·조일현·정문헌·신학용·안병엽·김선미·문병호·유기홍·정성호·한광원·이시종·임종인·이광철·최규성·김우남·지병문·백원우·유승희·제종길 의원 발의) ····· 17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주성영·황우여·곽성문·안병엽·이군현·이재오·고조흥·공성진·전여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4882) ····· 17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안택수·황우여·배일도·김광원·김태환·임인배·김석준·김기춘·이계경·선병렬·임종인·이상민·이상경·문병호·박세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3) ····· 17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발의)(김혁규·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곽성문·권선택·김교흥·김낙성·김낙순·김동철·김명자·김선미·김성곤·김영숙·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종인·김춘진·김태홍·김학원·강길부·김현미·김형주·노영민·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희상·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학용·심재덕·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광재·이근식·이기우·

이상경・이상민・이상배・이시종・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인제・이화영・장경수・장복심・장향숙・정덕구・정동채・정몽준・정성호・정장선・정진석・제종길・조경태・조성래・조성태・조일현・주승용・채수찬・최용규・최재성・한광원・한병도・홍문표・홍미영・홍창선・황진하 의원 발의) ····· 17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심재덕・노영민・이은영・한광원・김혁규・권선택・서갑원・오영식・우제항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2) ····· 17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우제항・김명자・박재완・박상돈・안상수・주승용・이인기・장복심・유재건・유선호・조성래・정성호・정의화・최성・김덕규・이은영 의원 발의) ····· 17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노영민・김진표・이상열・김종률・민병두・우윤근・이계진・한화갑・김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286) ····· 17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은영・김영춘・이경숙・정청래・김우남・선병렬・김재윤・박찬석・이시종・박영선・조성래의원 발의) ····· 17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황우여・유기준・이인기・곽성문・정병국・안상수・황진하・이성구・심재철・이계경・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9) ····· 17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임태희・이인기・서재관・한선교・이군현・김정권・이재오・정갑윤・권경석・이계경・안경률 의원 발의) ····· 18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덕룡 의원 대표발의)(김덕룡・김무성・김영선・박진・안명옥・안홍준・유기준・이원복・이해봉・이혜훈・정종복・정진섭・주성영・최구식・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 18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윤원호・정청래・우상호・김재윤・김영주・신학용・배기선・최규식・안민석・김교흥・김현미・김희선・서혜석・윤호중 의원 발의) ····· 18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김낙순・양형일・이인영・강기정・심재덕・엄호성・이인기・우제창・김우남・김부겸・한광원・신중식・김동철・류근찬・제종길・이병석・조경태・이강두・황우여・김영덕・최성・박기춘・김재윤・김재원 의원 발의) ····· 18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춘 의원 대표발의)(김기춘・이종구・권경석・황진하・최병국・김용갑・이해봉・박종근・최연희・정두언・정갑윤・유기준・황우여・이재창・안경률・김학송・박희태・안홍준・최구식・김영덕 의원 발의) ····· 18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천영세・단병호・심상정・노회찬・이영순・현애자・강기갑・최순영・권영길・김희선 의원 발의) ····· 18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이광재・김동철・이시종・조경태・강성종・김태년・정장선・김명자・신명・유기홍・노영민・우원식・정청래・김형주・정봉주・안민석・김혁규・강혜숙・김재윤・양승조・신학용・최성・이목희 의원 발의) ····· 18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안택수・주성영・이계경・안상수・정종복・김양수・신상진・맹형규・박성범・이성구・황우여・정병국 의원 발의) ····· 18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심재철・나경원・신상진・공성진・고조흥・이해봉・장윤석・정병국・안경률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3) ····· 18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강창일・송영길・유기홍・선병렬・주승용・이종걸・신명・노현송・양승조 의원 발의) ····· 18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김현미・엄호성・유승희・이광철・이미경・이은영・장복심・장향숙・조성래 의원 발의) ····· 18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발의)(김정훈 의원 외 127인 발의) ····· 18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발의)(장윤석 의원 외 127인 발의) ····· 18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발의)(김기현 의원 외 127인 발의)(의안번호 6685) · 18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의안번호 6686) · 18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김양수 · 김정권 · 정희수 · 이낙연 · 권경석 · 정두언 · 이상배 · 이인기 · 김석준 · 최병국 의원 발의) ····· 18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 · 단병호 · 천영세 · 심상정 · 노회찬 · 현애자 · 강기갑 · 최순영 · 임종인 · 이영순 의원 발의) ····· 18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의안번호 6847) … 18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신상진 · 안택수 · 이성구 · 서재관 · 김명자 · 이영호 · 이인기 · 김재원 · 이경재 · 박상돈 · 정성호 · 오제세 · 김애실 · 엄호성 · 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6) ····· 18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심재덕 · 이광철 · 노현송 · 최성 · 박상돈 · 이영호 · 강창일 · 김한길 · 박기춘 · 이종걸 의원 발의) ····· 18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 · 김태년 · 박상돈 · 박찬숙 · 심재덕 · 유기준 · 이계경 · 이재웅 · 이해봉 · 정종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7063) ····· 18
79. 選擧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조경태 · 복기왕 · 정성호 · 장경수 · 백원우 · 정청래 · 노영민 · 이은영 · 김원웅 · 임종석 · 김재윤 · 신기남 · 한명숙 · 김현미 · 안민석 · 이원영 · 이종걸 · 김태홍 · 최성 · 김영춘 · 정세균 · 유시민 · 우제창 · 양형일 · 유선호 · 지병문 · 박찬석 · 신중식 · 신학용 · 강창일 · 이미경 · 조정식 · 이상열 의원 발의) ····· 19
8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 ····· 19
81. 선거연령하향(만18세)조정에 관한 청원(김형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9
82. 재외국민참정권회복에 관한 청원(김덕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9
8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재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9
8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재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9
85.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9
8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태환 의원 발의)(김태환 의원 외 32인 발의) ····· 19
8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 · 황우여 · 김성곤 · 최재천 · 구논회 · 강길부 · 신국환 · 염동연 의원 외 10인 발의) ····· 19
88.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노현송 · 이군현 · 안상수 · 이원영 · 김기현 · 이상락 · 노회찬 · 주승용 · 배일도 · 정종복 · 유선호 · 권철현 · 정문헌 · 이기우 · 윤건영 · 박재완 · 김명주 · 심재철 · 김태환 · 정화원 · 김학송 · 이상득 · 심재덕 · 유기준 · 신국환 · 김양수 · 이성권 · 박형준 · 원희룡 · 정병국 · 이계경 · 진수희 · 안홍준 · 권오을 · 정두언 · 김충환 · 김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0271) ····· 19
89.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장향숙 · 이기우 · 이근식 · 김한길 · 유필우 · 허태열 · 유선호 · 엄호성 · 장윤석 · 전재희 · 김영춘 · 최재천 · 이시종 · 최구식 · 노현송 · 이혜훈 · 김태년 · 최인기 · 강혜숙 · 유승희 · 윤호중 · 정화원 · 신국환 · 임종석 · 유정복 · 이원영 · 진수희 · 정장선 · 이해봉 · 안민석 · 김재경 · 서혜석 · 박영선 · 김태홍 · 김재홍 · 현애자 · 박재완 의원 발의) ····· 19
90.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 김재원 · 유기준 · 안상수 · 이혜훈 · 김재경 · 이성권 · 강재섭 · 박재완 · 임인배 의원 발의) ····· 19
9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김재원 · 이명규 · 김정훈 · 유정복 · 김태환 · 심재철 · 김석준 · 안경률 · 박승환 · 허태열 · 유기준 · 안병엽 · 이혜훈 · 정의화 · 이계경 · 김희정 · 서재관 의원 발의) ····· 19
9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김희선 · 장복심 · 이

용희・서혜석・최순영・임종인・이호웅・손봉숙・이상민・한명숙・홍미영・이미경・강혜숙・김현미・김영주・이경숙・윤원호・장향숙・조배숙・박영선・이은영・이계경・이계안 의원 발의) ····· 19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강창일・노현송・박기춘・심재덕・서재관・이근식・이시종・이호웅・우윤근・우제창・조일현・최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9) ····· 19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김효석・홍준표・한화갑・김부겸・이상경・김정훈・이용희・김희선・김광원・맹형규・유기준・허태열・김명주・김종률・신중식・이인제・김무성・김정부・이계진・김병호・이근식・정병국・이강두・이성권・김동철・이정일・이혜훈・박상돈・김낙성・이인기・주승용・홍재형・권오을・임종석・권경석・신국환・고흥길・이방호・김춘진・변재일・이상배・조일현・노영민・임인배・김우남・엄호성・진수희・허천・안병엽・김영덕・고조흥・김정권・곽성문・신상진・정진석・안상수・이해봉・염동연・김낙순・권선택・서상기・류근찬・전여옥・박찬숙・이명규・이경재・박종근・최연희・김성곤・고경화・홍문표・김학송・박세환・김재경・서재관・심재덕・안택수・김충환・김재원・최인기・박계동・최경환・장윤석 의원 발의) ····· 19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염동연・강창일・박기춘・김영주・김동철・원혜영・우윤근・주승용・이정일・지병문・최규식・정두언・김태홍・유인태・강기정・이상열・노영민・최인기・우제항・정화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0) ····· 20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윤건영・조일현・엄호성・김재원・심재엽・이재오・안상수・배일도・정문헌・이강두・김정훈・박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1) ··· 20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재원・이인기・이해봉・엄호성・이주호・정성호・우제창・임해규・박찬숙・안상수・박재완・이근식・김태년・박세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624) ····· 20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노현송・강기정・이시종・강창일・정성호・박상돈・우제창・우제항・김동철・최규식 의원 발의) ····· 20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낙연・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정진석・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영덕・안경률・진수희・신학용 의원 발의) ····· 20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우원식・조일현・신중식・주승용・이호웅・이시종・우윤근・조경태・윤호중・박상돈 의원 발의) ····· 20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유인태・원혜영・김동철・이목희・조성래・강창일・염동연・박기춘・우제항 의원 발의)(의안번호 4203) ····· 20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박기춘・장향숙・이인영・홍미영・정성호・김선미・김영주・문병호 의원 발의) ····· 20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박기춘・정성호・장향숙・강기정・김동철・안병엽・조성태・김성곤・유필우・제종길・조성래・장복심 의원 발의) ····· 20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명자・엄호성・박기춘・노현송・김성곤・황우여・박상돈・이혜훈・이근식・이영호・심재덕의원 발의) ····· 20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유기준・김명주・김재원・엄호성・주성영・이혜훈・황진하・이재웅・전재희・김충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4) ····· 20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신학용・박명광・김태년・정화원・이계경・유기준・이해봉・황우여・정갑윤・박상돈・안상수・김영선・박재완 의원 발의) ····· 20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안상수・안택수・임인배・김광원・

황우여・정형근・곽성문・엄호성・김태환・정문헌・이인기・이계경・안병엽・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0) ····· 20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노영민・류근찬・김춘진・조정식・서갑원・최철국・김종률・김근태・김태년・이원영・강성종・홍창선・안병엽・우원식・최규성・한광원・이계경・정장선・이미경・이은영・문희상・이경숙・우제창・제종길・유선호・오제세・홍미영・김낙순・최규식・구논회・이인영・민병두・유기홍・김교홍・정봉주・최재성・윤원호・안민석・장향숙・김덕규・박상돈 의원 발의) ····· 20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발의)(이인영 의원 외 139인 발의) ····· 20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채일병・이해봉・김효석・신중식・김낙성・이낙연・김송자・이상열・손봉숙 의원 발의) ····· 20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임종인・이영호・안영근・김재윤・정성호・김우남・박기춘・노현송・김태홍・이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2) ····· 20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신학용・배기선・김영주・최인기・박상돈・김원웅・정장선・문석호・선병렬・김태년・황우여・고흥길・유기준・정갑윤・나경원 의원 발의) ····· 20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박세환・유기준・이성구・심재철・이경재・이해봉・고흥길・김석준・맹형규 의원 발의) ····· 21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배기선・강성종・강창일・권오을・권영길・김교홍・김동철・김선미・김재홍・김진표・김종률・김효석・노현송・문학진・문희상・서갑원・서혜석・신국환・우제창・이광철・오영식・임종석・윤호중・이은영・원혜영・양형일・장복심・정의화・최재성・최성・홍창선・우원식 의원 발의) ····· 21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문희・고경화・홍미영・김영숙・안명옥・박찬숙・김애실・송영선・정형근・윤원호・이계경・김송자・장복심・유승희・박순자・강혜숙・박찬석・이혜훈・조배숙・박영선・김희정・신명・진수희・이경숙・이영순・심상정・최순영・현애자・김영선・장향숙 의원 발의) ····· 21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임종석・김태홍・강기정・박상돈・지병문・임종인・박찬숙・홍미영・김태년・김재윤・김우남・김낙순・이인영・정성호・이은영・박기춘・이목희・양형일・노현송 의원 발의)(의안번호 6157) ····· 21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송자・김태홍・박재완・박찬숙・손봉숙・신상진・신중식・안상수・엄호성・유선호・이계안・이근식・이영호・이해봉・장복심・정동채・정진석・채일병 의원 발의)(의안번호 6529) ····· 21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성구・공성진・신국환・고조흥・박재완・김정권・유승민・신상진・배일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6553) ····· 21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 21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박형준・이주호・엄호성・김정권・김재원・유기준・장윤석・정갑윤・김정훈・공성진 의원 발의) ····· 21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남경필・신상진・진수희・정병국・정종복・권철현・현애자・최순영・이성권・장향숙・문병호의원 발의) ····· 21
122. 國民投票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동철・김선미・노현송・이철우・김형주・신기남・서갑원・김현미・박병석・한화갑・김기석 의원 발의) ····· 21
123. 國民投票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김효석・김송자・최인기・채일병・이승희・이낙연・신중식・손봉숙・권선택 의원 발의) ····· 21
124.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발의)(이인영 의원 외 107인 발의) ····· 21

1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 개정에 관한 청원(김충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1
126. 政黨法 一部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영춘·김부겸·이종걸·임종석·우상호·김현미·최재성·강기정·박영선·김영주·정청래 의원 발의) ····· 21
127. 政黨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엄호성·이강래·김춘진·선병렬·장복심·염동연·우제창·김태홍·김우남·정병국·유승희·이광철 의원 발의) ····· 21
1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낙연·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정진석·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영덕·안경률·진수희·신학용 의원 발의) ····· 21
1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이성권·권철현·심재철·김명주·정병국·정화원·고조흥·차명진·안홍준·임해규 의원 발의) ····· 21
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 22
1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김석준·김정권·박형준·엄호성·이계경·이성구·이인기·정문헌·정종복 의원 발의) ····· 22
133.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22
13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현미·김부겸·우원식·강창일·김원웅·노웅래·문학진·김명주·이은영·서갑원·송영길·김재윤·정청래·유선호·김덕규·오영식·김형주·김재홍·이기우·이인영·신기남·양형일·이호웅·이목희·우상호·유기홍·민병두·김기석·김태년·노영민·서재관·신중식·김영춘 의원 발의) ····· 22
135.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상민·강기정·노웅래·윤호중·정청래·이은영·김원웅·유승희·선병렬·이경숙·이광철·김재윤 의원 발의) ····· 22
136. 政治資金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이인영·이화영·정봉주·우상호·백원우·문학진·한병도·이기우·김부겸·윤호중·최재성·김태년·임종석 의원 발의) ····· 22
137.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재경·임인배·신상진·맹형규·황우여·이성권·김재원·유기준·유정복 의원 발의) ····· 22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천영세·정진석·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상열·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 의원 발의) ···· 22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김효석·김태년·유승희·신중식·이정일·김홍일·이낙연·최인기·이재오·노회찬·최순영·이상열·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706) ····· 22
1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김종률·단병호·박명광·심상정·안영근·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의원 발의)(의안번호 5713) ····· 22
1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39) ····· 22
1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장윤석·김양수·정병국·김정권·이계경·김성조·김희정·황진하·심재철·주성영·윤두환·임태희·공성진·최구식·안명옥·윤건영·박순자·정청래·정화원·신상진·차명진·이경재·김애실·정희수·김영덕·유기준·장향숙·정진섭·한병도·김영주·장복심·임종석·한광원·윤원호·이미경·우상호 의원 발의) ····· 22
1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김낙성·김덕규·김송자·김종인·

김효석・류근찬・박찬석・신국환・안영근・유재건・이낙연・장복심・최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5) ····· 22
1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 22
1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기현・김명주・김재경・김정권・김정훈・김양수・김학원・배일도・심재덕・안홍준・이주영・정갑윤・정두언 의원 발의) ····· 22
1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서병수・이계진・김영덕・임태희・김석준・김재경・차명진・박순자・안명옥・이종구・장윤석・정청래・민병두・안민석 의원 발의) ····· 22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7
147. 소위원회 구성의 건 ····· 87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남원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안건이 청원 3건을 포함해서 146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내일 대체토론 형식의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밀도 있는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오늘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건을 몇 개 유사한 안건끼리 묶어서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 제안설명은 각 개정안 제안 이유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치관계법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핵심 내용 위주로 일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소위원회별 안건 목록은 오늘 의사일정의 심사 편의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중요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각 소위의 안건 목록의 중요 항목별로 일괄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 각 해당 소위원회별로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제2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 논의에 앞서서 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 질의 시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겠는데, 첫 번째 제가 우리 한나라당 당론 법안으로 환노위에 제출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은 선거법 관련입니다. 이 두 안건이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요인경호법, 또 같은 김정훈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선거사범 관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2건도 지난번 특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상정 안건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 제가 제안한 겁니다만 이것은 전체 안건 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소위 안건에 선거 출마 정무직공무원의 사퇴시기 조정에 관한 법안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안, 그리고 수개표 실시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 3건이 1소위 안건 목록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박세환 위원 미리 확인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상배 아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안건들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실을 통해서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배 주성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노동위원회 쪽에 가 있는 법률안하고 운영위원회에 가 있는 법률안하고 그다음에 제1소위 안건으로…… 아마 2소위에 가 있나 그럴 거예요.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주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동조합법, 공무원·교원 조합 설립에 관한 법인가요? 그런 경우에 노동관계법으로 분류가 되고 또 요인경호법이라든가 경찰법, 청와대 경호실법…… 청와대 경호실법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2개 법안은 행자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여야 대표의원들께서 합의하실 때 정치관계법특위의 소관 법률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합의사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이 우리 특위의 소관 법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 대표들의 합의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이외의 법안을 우리 특위에서 다루려면 다시 여야 대표의 합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법률도 정치관계법특위의 소관으로 한다는 그런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상배 그것은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영숙·배일도·김영덕·김충환·허태열·나경원·김정훈·장윤석·박순자·유정복·이계진 의원 발의)
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최철국·김현미·정문헌·구논회·백원우·권선택·이근식·김석준·김영덕·유기준·정성호·김희선·김태홍·정청래·이목희·김춘진·최재천·김동철·홍재형·강기정·이영호·심재철·노웅래·선병렬·최용규·유시민·정화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0114)
3.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박기춘·조성래·김선미·노영민·원혜영·안병엽·최인기·심재덕·유정복·조경태·신국환·이근식·오제세·문석호·김원웅·우제항·문병호 의원 발의)
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박찬숙·강창일·김재홍·정성호·유시민·김원웅·박병석·이종걸·이상경·노영민·최용규·이화영·염동연·김부겸·이시종·이근식 의원 발의)
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정성호·박찬숙·이원영·정문헌·정청래·김원웅·최인기·류근찬·강기정·김형주·심재덕·이미경·노현송·최용규·이철우·노웅래·이계안·송영길 의원 발의)
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시종·오제세·유필우·지병문·양승조·강길부·권선택·정성호·이철우·신중식·안상수·박기춘·구논회·류근찬·선병렬·박상돈·최재성·김형주·장복심·최용규·서재관·노현송·박재완·김양수·김태홍·김원웅·이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0202)
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유시민·김기석·김동철·노현송·이철우·김선미·조성래·김형주·신기남·서갑원·김현미·박병석·한화갑 의원 발의)
8.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구논회·김우남·김원웅·김태년·김태홍·노영민·노현송·문석호·박상돈·백원우·복기왕·신중식·심재덕·오영식·오제세·원혜영·유선호·윤호중·이광철·이기우·이근식·이상경·이원영·이은영·임종석·장경수·장향숙·정성호·제종길·조경태·조정식·주승용·최용규·최재성·최재천 의원 발의)
9.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박승환·정문헌·박형준·황우여·신중식·정병국·이상경·이영호·김태환·이상득·박계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0232)
10.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이은영·이근

식・홍미영・조성래・오영식・선병렬・정청래・이미경・김태홍・장경수・안민석・김원웅・김재원・박명광・원혜영・정성호・송영길・최재성・노현송・유선호・유시민 의원 발의)

1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심재덕・박세환・김영숙・이군현・정몽준・이해봉・박재완・진수희・배일도・이근식・김영춘・이인기・김정훈・허태열・허천・정문헌・김우남・문학진・고진화・이강두 의원 발의)

1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고진화・권오을・권철현・김명주・김형오・맹형규・박승환・박형준・안경률・안명옥・안홍준・원희룡・유승민・이성권・정문헌・정화원・정병국・주호영・진수희・진영・최구식 의원 발의)

13.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명규・이군현・배일도・황진하・고경화・박종근・김재경・박순자・이인기・김문수・김정훈・임태희・이재오・박성범・박계동・이상득・송영선・김애실・김석준・이해봉・권영세・정문헌・박창달・최병국・홍문표・허천・고흥길・김재윤・김기현・김맹곤・김재원・장복심・박혁규 의원 발의)

1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심재덕・강봉균・강창일・권선택・김기석・김낙성・김명주・김문수・김선미・김성곤・김영춘・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현미・김희선・노웅래・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순자・박찬석・변재일・서재관・송영길・신국환・신기남・신학용・안민석・안병엽・양승조・염동연・오제세・우제창・원혜영・유승희・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경숙・이계안・이계진・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락・이상배・이시종・이용희・이은영・이재창・이호웅・임종석・장복심・정덕구・정몽준・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최규식・최용규・최재성・최철국・홍미영 의원 발의)

15.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김종률・이해봉・김태환・노웅래・이혜훈・이인기・황우여・고진화・이재창・김영춘・이시종・박세환・유기준・박성범・엄호성・허태열・서재관・안상수・유승민・안경률・권오을・정두언・공성진・정성호・김재홍・유필우・박재완 의원 발의)

1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박계동・엄호성・서재관・안병엽・유승희・강길부・최인기・윤원호・오제세 의원 발의)

1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박종근・전여옥・신상진・고경화・엄호성・이윤성・심재철・김석준・김충환・이경재・정병국・류근찬・안상수・김재원 의원 발의)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한광원・이시종・심재덕・박찬석・박찬숙・김선미・이영호・조일현・서병수・조경태・신학용・정봉주・이원영・김태홍・강길부・노웅래・우제창 의원 발의)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신기남・정봉주・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박찬숙・선병렬・김춘진・주승용・임종석・김명자 의원 발의)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이재웅・심재엽・김재원・김영숙・정두언・안경률・김덕룡・정갑윤・이진구・심재철・정병국・이승희・신상진・이종구・맹형규・이인제・김충환・박진・이혜훈・최병국・정형근・김문수・엄호성・홍준표・이군현・박성범・진영・김희정・유기준・고조흥・공성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52)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윤건영・이계경・엄호성・나경원・박순자・박찬숙・이혜훈・이주호・안경률・김정훈 의원 발의)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배일도・박계동・전여옥・배기선・최인기・황우여・이주호・심재철・정병국・진수희・김재원・김광원・정희수・신상진・정화원・김충환・최경환・이혜훈 의원 발의)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황우여·엄호성·김정권·정병국·이해봉·안상수·김재원·이혜훈·권경석·권오을·고흥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8)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김정권·이해봉·심재철·김종률·윤건영·신상진·이주호·정병국·나경원·노현송·엄호성 고조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7)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강창일·김재홍·홍미영·조성래·장복심·박기춘·양형일·지병문·이재창·원혜영·서병수·김무성·고흥길·이영순 의원 발의)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김형오·심재철·이인기·정병국·유기준·엄호성·장윤석·김광원·박재완·안상수·황우여·안병엽·권영세 의원 발의)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선·엄호성·김재윤·노현송·이해봉·황우여·이화영·이시종·심재철·이광철·윤원호·안민석·이미경·임종인·김재홍·이영순 의원 발의)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김한길·이낙연·천영세 의원 외 159인 발의)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김성조·김재경·박희태·안상수·엄호성·유기준·유승민·윤건영·주호영·홍문표·황우여 의원 발의)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해봉·엄호성·박재완·김재원·정진섭·곽성문·박상돈·윤건영·박성범·공성진·고경화·박세환·이인기·나경원·신상진·정병국·안경률·김무성·김충환·유승민·안상수·김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99)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진수희·정병국·이방호·안경률·박재완·심재엽·김기춘·김재원·유정복·이군현 의원 발의)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발의)(이재오 의원 외 125인 발의)(의안번호 4101)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공성진·김재원·김태년·김효석·박재완·박찬숙·신중식·안병엽·엄호성·유기준·이근식·이영호·임해규·주호영·지병문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8)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계경·김정권·이해봉·임태희·이성구·주성영·임해규·공성진·김충환·주호영·안병엽·박찬숙·박재완·엄호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9)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박세환·심재철·안상수·장윤석·황우여·이인기·임해규·배일도·박계동·이경재 의원 발의)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정갑윤·유기준·전여옥·김충환·김정권·안경률·강재섭·배일도·이주호·이인기 의원 발의)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강창일·김선미·박기춘·변재일·양형일·우제창·원혜영·이시종·조성래·최규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226)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발의)(이재오 의원 외 124인 발의)(의안번호 4272)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공성진·김석준·김영선·김태환·박재완·박형준·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계경·이성권·이인기·이해봉·정갑윤·최구식·황우여 의원 발의)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장경수·노영민·한광원·박찬석·유승희·박기춘·정청래·제종길·김재윤·우원식 의원 발의)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김광원·이계경·곽성문·임인배·이영호·황진하·김영선·신국환·이시종·김성조·심재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485)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선미·김원웅·김재

윤·박상돈·신학용·유승희·이영호·제종길·최재성·한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487)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장경수·박기춘·장복심·엄호성·이인기·정성호·박상돈·이경재·정화원·제종길 의원 발의)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임종석·장향숙·이인영·홍미영·문병호·최성·최용규·홍재형·김덕규·박기춘·이미경·한병도·최재성·노영민·김선미·윤원호·김춘진·김현미·이시종·김교흥·김낙순·정청래 의원 발의)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민 의원 외 141인 발의)(의안번호 4626)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무성·엄호성·김태년·주성영·정문헌·양형일·황우여·박상돈·박세환·정동채·안상수·이인기·고조흥·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8)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재윤·정병국·박상돈·김종률·엄호성·서재관·안병엽·강기정·이시종·홍창선·염동연·변재일 의원 발의)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구논회·김동철·김재윤·박상돈·심재덕·우윤근·이시종·이인기·장복심·홍재형 의원 발의)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강창일·조일현·정문헌·신학용·안병엽·김선미·문병호·유기홍·정성호·한광원·이시종·임종인·이광철·최규성·김우남·지병문·백원우·유승희·제종길 의원 발의)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주성영·황우여·곽성문·안병엽·이군현·이재오·고조흥·공성진·전여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4882)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안택수·황우여·배일도·김광원·김태환·임인배·김석준·김기춘·이계경·선병렬·임종인·이상민·이상경·문병호·박세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83)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발의)(김혁규·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곽성문·권선택·김교흥·김낙성·김낙순·김동철·김명자·김선미·김성곤·김영숙·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종인·김춘진·김태홍·김학원·강길부·김현미·김형주·노영민·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희상·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학용·심재덕·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광재·이근식·이기우·이상경·이상민·이상배·이시종·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인제·이화영·장경수·장복심·장향숙·정덕구·정동채·정몽준·정성호·정장선·정진석·제종길·조경태·조성래·조성태·조일현·주승용·채수찬·최용규·최재성·한광원·한병도·홍문표·홍미영·홍창선·황진하 의원 발의)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심재덕·노영민·이은영·한광원·김혁규·권선택·서갑원·오영식·우제항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2)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우제항·김명자·박재완·박상돈·안상수·주승용·이인기·장복심·유재건·유선호·조성래·정성호·정의화·최성·김덕규·이은영 의원 발의)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노영민·김진표·이상열·김종률·민병두·우윤근·이계진·한화갑·김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286)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은영·김영춘·이경숙·정청래·김우남·선병렬·김재윤·박찬석·이시종·박영선·조성래의원 발의)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황우여·유기준·이인

기・곽성문・정병국・안상수・황진하・이성구・심재철・이계경・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9)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임태희・이인기・서재관・한선교・이군현・김정권・이재오・정갑윤・권경석・이계경・안경률 의원 발의)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덕룡 의원 대표발의)(김덕룡・김무성・김영선・박진・안명옥・안홍준・유기준・이원복・이해봉・이혜훈・정종복・정진섭・주성영・최구식・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윤원호・정청래・우상호・김재윤・김영주・신학용・배기선・최규식・안민석・김교흥・김현미・김희선・서혜석・윤호중 의원 발의)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김낙순・양형일・이인영・강기정・심재덕・엄호성・이인기・우제창・김우남・김부겸・한광원・신중식・김동철・류근찬・제종길・이병석・조경태・이강두・황우여・김영덕・최성・박기춘・김재윤・김재원 의원 발의)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춘 의원 대표발의)(김기춘・이종구・권경석・황진하・최병국・김용갑・이해봉・박종근・최연희・정두언・정갑윤・유기준・황우여・이재창・안경률・김학송・박희태・안홍준・최구식・김영덕 의원 발의)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천영세・단병호・심상정・노회찬・이영순・현애자・강기갑・최순영・권영길・김희선 의원 발의)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이광재・김동철・이시종・조경태・강성종・김태년・정장선・김명자・신명・유기홍・노영민・우원식・정청래・김형주・정봉주・안민석・김혁규・강혜숙・김재윤・양승조・신학용・최성・이목희 의원 발의)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안택수・주성영・이계경・안상수・정종복・김양수・신상진・맹형규・박성범・이성구・황우여・정병국 의원 발의)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심재철・나경원・신상진・공성진・고조흥・이해봉・장윤석・정병국・안경률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3)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강창일・송영길・유기홍・선병렬・주승용・이종걸・신명・노현송・양승조 의원 발의)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김현미・엄호성・유승희・이광철・이미경・이은영・장복심・장향숙・조성래 의원 발의)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발의)(김정훈 의원 외 127인 발의)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발의)(장윤석 의원 외 127인 발의)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발의)(김기현 의원 외 127인 발의)(의안번호 6685)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의안번호 6686)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양수・김정권・정희수・이낙연・권경석・정두언・이상배・이인기・김석준・최병국 의원 발의)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현애자・강기갑・최순영・임종인・이영순 의원 발의)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의안번호 6847)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신상진・안택수・이성구・서재관・김명자・이영호・이인기・김재원・이경재・박상돈・정성호・오제세・김애실・엄호성・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6)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심재덕・이광철・노현송・최성・박상돈・이영호・강창일・김한길・박기춘・이종걸 의원 발의)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김태년・박상돈・박찬

숙·심재덕·유기준·이계경·이재웅·이해봉·정종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7063)

79. **選擧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조경태·복기왕·정성호·장경수·백원우·정청래·노영민·이은영·김원웅·임종석·김재윤·신기남·한명숙·김현미·안민석·이원영·이종걸·김태홍·최성·김영춘·정세균·유시민·우제창·양형일·유선호·지병문·박찬석·신중식·신학용·강창일·이미경·조정식·이상열 의원 발의)

8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

81. **선거연령하향(만18세)조정에 관한 청원**(김형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82. **재외국민참정권회복에 관한 청원**(김덕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8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재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8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재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85.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86.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태환 의원 발의)(김태환 의원 외 32인 발의)

87.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황우여·김성곤·최재천·구논회·강길부·신국환·염동연 의원 외 10인 발의)

88.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노현송·이군현·안상수·이원영·김기현·이상락·노회찬·주승용·배일도·정종복·유선호·권철현·정문헌·이기우·윤건영·박재완·김명주·심재철·김태환·정화원·김학송·이상득·심재덕·유기준·신국환·김양수·이성권·박형준·원희룡·정병국·이계경·진수희·안홍준·권오을·정두언·김충환·김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0271)

89.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장향숙·이기우·이근식·김한길·유필우·허태열·유선호·엄호성·장윤석·전재희·김영춘·최재천·이시종·최구식·노현송·이혜훈·김태년·최인기·강혜숙·유승희·윤호중·정화원·신국환·임종석·유정복·이원영·진수희·정장선·이해봉·안민석·김재경·서혜석·박영선·김태홍·김재홍·현애자·박재완 의원 발의)

90.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재원·유기준·안상수·이혜훈·김재경·이성권·강재섭·박재완·임인배 의원 발의)

9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재원·이명규·김정훈·유정복·김태환·심재철·김석준·안경률·박승환·허태열·유기준·안병엽·이혜훈·정의화·이계경·김희정·서재관 의원 발의)

9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희선·장복심·이용희·서혜석·최순영·임종인·이호웅·손봉숙·이상민·한명숙·홍미영·이미경·강혜숙·김현미·김영주·이경숙·윤원호·장향숙·조배숙·박영선·이은영·이계경·이계안 의원 발의)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강창일·노현송·박기춘·심재덕·서재관·이근식·이시종·이호웅·우윤근·우제창·조일현·최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9)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김효석·홍준표·한화갑·김부겸·이상경·김정훈·이용희·김희선·김광원·맹형규·유기준·허태열·김명주·김종률·신중식·이인제·김무성·김정부·이계진·김병호·이근식·정병국·이강두·이성권·김동철·이정일·이혜훈·박상돈·김낙성·이인기·주승용·홍재형·권오을·임종석·권경석·신국환·고흥길·이방호·김춘진·변재일·이상배·조일현·노영민·임인배·김우남·엄호성·진수희·허천·안병엽·김영덕·고조흥·김정권·곽성문·신상진·정진석·안상수·이해봉·염동연·김낙순·권선택·서상기·류근찬·전여옥·박찬숙·이명규·이경재·박종근·최연희·김성곤·고경화·홍문표·김학송·박세환·김재경·서재관·심재덕·안택수·김충

환・김재원・최인기・박계동・최경환・장윤석 의원 발의)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염동연・강창일・ 박기춘・김영주・김동철・ 원혜영・우윤근・주승용・이정일・지병문・최규식・정두언・김태홍・유인태・강기정・이상열・노영민・최인기・우제항・정화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0)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윤건영・조일현・엄호성・김재원・심재엽・이재오・안상수・배일도・정문헌・이강두・김정훈・박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1)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재원・이인기・ 이해봉・엄호성・이주호・정성호・우제창・임해규・박찬숙・안상수・박재완・이근식・김태년・ 박세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624)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노현송・강기정・이시종・강창일・정성호・박상돈・우제창・우제항・김동철・최규식 의원 발의)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낙연・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정진석・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영덕・안경률・진수희・신학용 의원 발의)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우원식・조일현・신중식・주승용・이호웅・이시종・우윤근・조경태・윤호중・박상돈 의원 발의)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유인태・원혜영・김동철・이목희・조성래・강창일・염동연・박기춘・우제항 의원 발의)(의안번호 4203)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박기춘・장향숙・이인영・홍미영・정성호・김선미・김영주・문병호 의원 발의)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박기춘・정성호・장향숙・강기정・김동철・안병엽・조성태・김성곤・유필우・제종길・조성래・장복심 의원 발의)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명자・엄호성・박기춘・노현송・김성곤・황우여・박상돈・이혜훈・이근식・이영호・심재덕의원 발의)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유기준・김명주・김재원・엄호성・주성영・이혜훈・황진하・이재웅・전재희・김충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4)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신학용・박명광・김태년・정화원・이계경・유기준・이해봉・황우여・정갑윤・박상돈・안상수・김영선・박재완 의원 발의)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안상수・안택수・임인배・김광원・황우여・정형근・곽성문・엄호성・김태환・정문헌・이인기・이계경・안병엽・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0)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노영민・류근찬・김춘진・조정식・서갑원・최철국・김종률・김근태・김태년・이원영・강성종・홍창선・안병엽・우원식・최규성・한광원・이계경・정장선・이미경・이은영・문희상・이경숙・우제창・제종길・유선호・오제세・홍미영・김낙순・최규식・구논회・이인영・민병두・유기홍・김교홍・정봉주・최재성・윤원호・안민석・장향숙・김덕규・박상돈 의원 발의)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발의)(이인영 의원 외 139인 발의)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채일병・이해봉・김효석・신중식・김낙성・이낙연・김송자・이상열・손봉숙 의원 발의)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임종인・이영호・안영근・김재윤・정성호・김우남・박기춘・노현송・김태홍・이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2)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신학용・배기선・김영주・최인기・박상돈・김원웅・정장선・문석호・선병렬・김태년・황우여・고흥길・유기준・정갑윤・나경원 의원 발의)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박세환・유기준・이성구・심재철・이경재・이해봉・고흥길・김석준・맹형규 의원 발의)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배기선・강성종・강창일・권오을・권영길・김교흥・김동철・김선미・김재홍・김진표・김종률・김효석・노현송・문학진・문희상・서갑원・서혜석・신국환・우제창・이광철・오영식・임종석・윤호중・이은영・원혜영・양형일・장복심・정의화・최재성・최성・홍창선・우원식 의원 발의)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문희・고경화・홍미영・김영숙・안명옥・박찬숙・김애실・송영선・정형근・윤원호・이계경・김송자・장복심・유승희・박순자・강혜숙・박찬석・이혜훈・조배숙・박영선・김희정・신명・진수희・이경숙・이영순・심상정・최순영・현애자・김영선・장향숙 의원 발의)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임종석・김태홍・강기정・박상돈・지병문・임종인・박찬숙・홍미영・김태년・김재윤・김우남・김낙순・이인영・정성호・이은영・박기춘・이목희・양형일・노현송 의원 발의)(의안번호 6157)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송자・김태홍・박재완・박찬숙・손봉숙・신상진・신중식・안상수・엄호성・유선호・이계안・이근식・이영호・이해봉・장복심・정동채・정진석・채일병 의원 발의)(의안번호 6529)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성구・공성진・신국환・고조흥・박재완・김정권・유승민・신상진・배일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6553)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박형준・이주호・엄호성・김정권・김재원・유기준・장윤석・정갑윤・김정훈・공성진 의원 발의)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남경필・신상진・진수희・정병국・정종복・권철현・현애자・최순영・이성권・장향숙・문병호의원 발의)

122. **國民投票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동철・김선미・노현송・이철우・김형주・신기남・서갑원・김현미・박병석・한화갑・김기석 의원 발의)

123. **國民投票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김효석・김송자・최인기・채일병・이승희・이낙연・신중식・손봉숙・권선택 의원 발의)

124.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발의)(이인영 의원 외 107인 발의)

1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 개정에 관한 청원**(김충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6. **政黨法 一部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영춘・김부겸・이종걸・임종석・우상호・김현미・최재성・강기정・박영선・김영주・정청래 의원 발의)

127. **政黨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엄호성・이강래・김춘진・선병렬・장복심・염동연・우제창・김태홍・김우남・정병국・유승희・이광철 의원 발의)

1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낙연・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정진석・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영덕・안경률・진수희・신학용 의원 발의)

1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심재덕・노영민・이은영・한광원・김혁규・권선택・서갑원・오영식・우제항 의원 발의)

1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이성권・권철현・심재철・김명주・정병국・정화원・고조흥・차

명진・안홍준・임해규 의원 발의)

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1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김석준・김정권・박형준・엄호성・이계경・이성구・이인기・정문헌・정종복 의원 발의)

133.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13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현미・김부겸・우원식・강창일・김원웅・노웅래・문학진・김명주・이은영・서갑원・송영길・김재윤・정청래・유선호・김덕규・오영식・김형주・김재홍・이기우・이인영・신기남・양형일・이호웅・이목희・우상호・유기홍・민병두・김기석・김태년・노영민・서재관・신중식・김영춘 의원 발의)

135.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상민・강기정・노웅래・윤호중・정청래・이은영・김원웅・유승희・선병렬・이경숙・이광철・김재윤 의원 발의)

136. **政治資金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이인영・이화영・정봉주・우상호・백원우・문학진・한병도・이기우・김부겸・윤호중・최재성・김태년・임종석 의원 발의)

137.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재경・임인배・신상진・맹형규・황우여・이성권・김재원・유기준・유정복 의원 발의)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천영세・정진석・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상열・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 의원 발의)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김효석・김태년・유승희・신중식・이정일・김홍일・이낙연・최인기・이재오・노회찬・최순영・이상열・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706)

1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김종률・단병호・박명광・심상정・안영근・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의원 발의)(의안번호 5713)

1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39)

1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장윤석・김양수・정병국・김정권・이계경・김성조・김희정・황진하・심재철・주성영・윤두환・임태희・공성진・최구식・안명옥・윤건영・박순자・정청래・정화원・신상진・차명진・이경재・김애실・정희수・김영덕・유기준・장향숙・정진섭・한병도・김영주・장복심・임종석・한광원・윤원호・이미경・우상호 의원 발의)

1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김낙성・김덕규・김송자・김종인・김효석・류근찬・박찬석・신국환・안영근・유재건・이낙연・장복심・최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5)

1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1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기현・김명주・김재경・김정권・김정훈・김양수・김학원・배일도・심재덕・안홍준・이주영・정갑윤・정두언 의원 발의)

1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서병수・이계진・김영덕・임태희・김석준・김재경・차명진・박순자・안명옥・이종구・장윤석・정청래・민병두・안민석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146항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6건 제안설명서 및 청원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백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환기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배부가 잘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전문위원 백환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른 검토보고서 유인물이 3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등 78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인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관련입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관해서는 김기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유기준 의원안, 홍준표 의원안, 김형오 의원안, 이영호 의원안, 김성곤 의원안, 김덕룡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등 총 9건의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부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의 연기 등입니다.

김기춘 의원안 및 김정훈 의원안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추천후보자가 사망 등에 따른 추가등록신청을 위하여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8조의 규정과 현대국가에서의 정당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등록의 대상자를 개정안과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정당추천후보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작업에 의한 개표 의무화 관련입니다.

김기현 의원안 및 안택수 의원안은 개표에 있어서 투표수의 계산과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작성은 수작업으로 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수작업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현재 투표지를 분류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투표지의 유무효 여부를 잠정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후 다시 투표지의 유무효에 관해서 육안에 의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지의 분류를 수작업에 의하여 반드시 하게 할 경우 개표사무원의 피로를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개표점검의 부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고, 개표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정의무의 부과입니다.

장윤석 의원안은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선거 관련 기사, 방송, 보도에 대해 임의로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보도, 논평 등 여론을 형성하거나 조성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 역시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관련입니다.

이재오 의원안은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의 공표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된 사실을 허위로 결정한 때에는 그 공표를 취소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전파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안, 이해봉 의원안 및 유기준 의원안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고 동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선거 사유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당선무효의 경우를 추가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후보자의 당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다른 범죄보다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의 공표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법원은 선거소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의 신상자료나 도덕성에 관한 사항 외에도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 선거공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 점,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서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범죄행위자의 신분이나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 등을 고려함이 없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형량가중 및 공소시효의 연장에 있어 대통령선거에서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같은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입니다.

주성영 의원 및 심재철 의원안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이 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동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선거법상 대원칙을 선언하는 총칙규정으로서 공무원 등의 추상적 의무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정갑윤 의원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기구로 설치하려는 것은 선거보도에 관한 이중적인 심의를 제거하여 심의기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이 있겠으나 보도의 자유는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언론의 자유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 배기선 의원 대표발의 등 3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 관련입니다.

배기선 의원안은 선거공약서의 작성 대상을 모든 선거의 후보자로 확대하고 예비후보자가 정책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정책공약집·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서·선거공보·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되며, 자료의 작성이 임의적인 사항인 점과 정책선거를 촉진하는 효과에서 보면 긍정적이나 유사한 자료를 수회 발간하게 되므로 비효율·비경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저유효투표율 제도 등입니다.

강창일 의원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20% 미만인 때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여 최저유효투표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유효투표율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피선거인의 대표성·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율에 미달된 경우 다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투표율의 저조를 이유로 당선인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의 의무화입니다.

문희 의원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 시 당해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 후에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입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시에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결사의 자유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인영 의원안 및 최인기 의원안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완전국민참여경선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행 당내 경선제도는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신설·규정되었습니다.

예비선거제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밀실공천을 방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며, 예비선거 진행 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시험할 수 있고, 능력이 없는 후보자를 조기에 퇴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또한 일반 유권자에게도 정당의 공직후보 공천을 위한 선거에 참여를 허용하여 보다 많은 민의를 수렴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점과 정당의 고유한 정강정책보다 일반 국민의 선호에 맞추는 후보자가 승리할 수 있어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정당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선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당내 경선 비용제한액의 설정입니다.

이상열 의원안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하여 당내 경선 시 비용제한액을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의 5%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경선후보자가 경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액 규정을 신설하여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하고 깨끗한 당내 경선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경선후보자 경선 비용을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로 제한하려는 것은 정당마다 규모가 달라 선거인의 수나 선거운동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선 비용도 정당마다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 정당의 경선 비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정당의 결

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당 내부의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입니다.

강창일 의원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에게나 상시 허용하되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며, 당내 경선운동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경선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투표소 개표제의 도입입니다.

양형일 의원안은 현행 개표방식이 집중개표 방식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투표소 개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투표소 개표제도는 별도의 개표소 설비와 투표함 등의 회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개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회송 과정에서의 부정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투표사무종사자가 개표사무를 겸하므로 별도의 개표사무종사자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표소마다 개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분산되어 개표한 결과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합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개표과정에서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집중개표의 경우보다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분산개표로 인하여 선거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개표 결과 확정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집중개표방식과 개정안의 투표소개표방식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 검토하여 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4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위탁사무 범위의 확대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사무뿐만 아니라 당대표, 시도당 위원장, 중앙위원 등 당직자 선출 과정에서도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나 투개표 과정의 혼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선거까지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정당 내부의 선거마다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게 되면 선관위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당직자의 선거위탁관리비용을 공직선거후보자의 당내 경선과 같이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허용 및 모금한도액 설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안과 손봉숙 의원안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대통령선거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하여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후원회를 허용하며,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을 각각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70과 100분의 50으로 하려는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을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이 경우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추가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경선을 치르지 아니하는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후원회의 모금한도액과 관련하여 노회찬 의원

안과 손봉숙 의원안은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50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하기 때문에 금년 2월 기준으로 볼 때 모금한도액은 노회찬 의원안에 따르면 약 322억 원, 손봉숙 의원안에 따르면 약 2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에 따를 경우 약 23억, 이때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46억까지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금한도액을 높게 획정할 경우 과열선거의 우려가 있고 낮게 획정할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모금한도액을 획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의 허용입니다.

노회찬 의원안 및 손봉숙 의원안은 폐지된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정당의 재정건전화와 선거 경비의 합법적인 조달을 위하여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는 2004년 16대 정개특위에서 폐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2004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동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5년 17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계속 폐지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의 재정건전화와 선거 경비의 합법적인 조달을 위한 의원님들의 법률안 개정 제안취지와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선거 경비의 합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 또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의 폐지 후 총선을 치른 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연간 모금한도액의 제한적 확대입니다.

배일도 의원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원회도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와 같이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에 비하여 정당대표성이 강하나 이러한 지위의 차이가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2배의 차이를 두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배 백환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배부된 인쇄물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토론에 앞서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방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질의와 대체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하세요.

○張倫碩 委員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자료 제출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타당 경선후보자에 대한 다른 정당 관계자의 발언에 관해서 모니터링해 주신 것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냥 요약본만 제출해 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서 모니터링한 원 데이터, 원 자료, 말하자면 발언록이지요. 그 자체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니터링한 것도 있는데 좀 누락된 것이 있는 듯이 보여요. 한 번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보완해서 원 자료, 또 누락된 것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바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정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잠깐만 있어 봐요. 내 발언 중에 자꾸 그래요!

사무총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또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데 뭡니까?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 저희들이 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선거법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배 아니,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질의보다, 보고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입장을 좀 듣고……

○위원장 이상배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할 때…… 보고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하고 이번에 다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확실한 입장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일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현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재외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법제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제실장 나와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은 총장께도 확실하게 보고를 드려서 두 분이 똑같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실장 이종우 법제실장 이종우입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요, 그리고 선거의 절차 및 주요내용, 재외선거 도입 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1항 중 선거인 명부를 주민등록자만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재외국민 등 주민등록말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38조1항 중 부재자 신고를 국내거주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한 것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단순위헌으로 선고할 경우에 법적 공백 및 혼란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 기술적인 측면과 공정성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제도연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3년 8월 27일 개정의견을 제출한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재외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금년 6월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재외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90% 정도가 투표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응답하여 투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외선거 절차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는 최소한 선거일 전 100일부터 60일간, 그러면 선거일 전 40일이 되겠습니다.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공관의 장에게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30일간 하도록 하여 선거 준비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재외국민이 밀집된 LA 지역의 경우에는—거기에는 재외국민 수가 51만 7000명 정도 됩니다—약 40만 정도의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려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신청인의 거소를 관할하는 공관별로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내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도록 하여 이중등재를 방지해야 합니다.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은 위원회가 개설한 인터넷 열람사이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 내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일 전 30일에 명부를 확정하고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투표 및 개표 사항입니다.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모든 공관에서 투표를 실시함에 따라서 재외공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공관이라든지 문화원, 그밖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투표소 설치 운영에 따른 기준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소는 적정한 것은 3일간, 투표소당 6000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조사한 재외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적극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 6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의 LA 경우에는 예상 선거인이 39만 5000명 정도 됩니다. 60%면 최소한 24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0개의 투표소가 필요해집니다. 운영기간을 3일에서 다소 늘리더라도 최소한 30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 장소 확보라든지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투표소의 안전성 담보, 투표관리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재외투표소마다 각 2명씩 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투표를 마친 투표지를 외교파우치를 이용해서 선관위에 송부하면 중앙선관위는 개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운동방법 제한입니다.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송광고, 방송연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광고 등에 한해서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외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나 기부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정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기간에 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재해 분쟁 등의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서 국내에서 당선인을 결정이라든지 재결정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재외공관의 장이 수행하는 선거사무 관리에 필요한 인력, 그밖의 모든 사항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재외선거 도입 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높은 참여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을 위하여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사전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첫 번째, 재외선거인 등록 및 명부 작성입니다.

LA나 뉴욕, 오사카 등 주요 공관은 재외국민 수가 50만 내지 20만 이상으로서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늦

어도 선거일 전 100일이 도래하는 9월 10일부터 60일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41개국 재외공관 304개 투표소의 설치 문제입니다.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서 141개 공관 외에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160여 개의 투표소는 무엇보다도 치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선거용품과 투표지를 공관에서 수·회송함에 있어서도 안전성·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인의 투표 편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외공관장은 재외선거인 밀집 정도라든지 교통이나 이동거리,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되, 어떤 장소에 몇 개를 설치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 정당 간 유·불리 시비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 현지 확인, 거기에 대한 판단, 특히 치외법권 문제, 투표소 안전장치 담보, 외국의 영토에서 공무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해당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A의 경우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 30개 이상, 그다음에 뉴욕 동경 오사카 등도 최소 20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재외공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안정화 관련입니다.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려면 공관별로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중앙선관위가 이를 통합하여 금치산 선고 여부, 범죄 경력 여부 등 행자부·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연계해서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업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야 하는바, 장래의 입법 내용을 예측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미리 개발해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발자 선정, 프로그램 개발, 시험운용, 교육 등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번째, 선거관리 인력 확보 및 교육·파견입니다.

재외국민 밀집 공관, 예를 들어서 5개 이상 설치하는 주요 공관에는 우리 소속 직원을 차출·파견하여 재외선거사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이들의 선발·교육, 공관에 파견해서 다시 재교육하는 부분도 상당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 관련입니다.

국외에서 지출되는 선거비용은 조사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선거비용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주요 공관에는 주재관을 파견하여 기부행위나 매수행위 등 불법행위 예방과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재외국민등록 홍보입니다.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인등록을 동시에 하면 업무량이 배가 되어 미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재외국민등록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 실정에 맞는 홍보매체 개발,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신문·방송사, 한인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준비사항입니다.

법이 입안되면 거기에 따른 규칙과 편람, 지침 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작성·시달하여서 8월까지는 보급이 완료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입니다.

재외선거사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외통부, 그다음에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한 행자부와 법무부, 재외선거인에게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서 투표용지를 발송할 정통부, 파병부대 내 투표소 설치와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담당할 국방부 등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외통부의 견해입니다.

지금 외통부와는 그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방문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통부 의견으로서는, 재외공관장 책임하에서 단기간의 선거인명부 등록신청과 공관 외 투표소 운영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데 시행에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견해를 실무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외국민 규모가 크고 여론조사 결과 투표 참여가 높을 것이 예상되므로 당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입법 후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수가 101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실시 2년 전에 입법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지난 6월 국회의 입법 의지를 반영하여서 남은 6개월이라도 최선의 준비 노력을 다하는 것이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대하여 계기 시마다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재외선거를 도입할 경우 선거 일정, 그다음 우리 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그다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외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대체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7분 전후로 해서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선관위 보고에 대한 질의와 동시에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여기 서초구을 출신 김덕룡 의원, 인천 서구·강화 출신 이경재 의원 참석하셔서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의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와 관련해서 총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선거제도의 도입 절차나 방법에 관해서 왔다갔다, 오락가락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체류자만 하자고 그랬다가 그 후에 왜 단기체류자만 한정해서 해야 되느냐, 영주권자까지 확대하자 했더니 또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된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와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6월 국회가 끝난 것이 7월 3일입니다. 7월 3일까지 통과되면 된다 그랬다가 지금 열흘 정도 채 안 지났는데 열흘쯤 지난 시점이 되니까 이제 안 된다…… 열흘 만에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한나라당은 여기에 찬성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반대하거나 유보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만약에 오케이 해서 합의만 되면, 영주권자까지 도입해서 하자라고 하는 합의만 오늘이라도 된다면, 현재 요 시점에서 합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선관위가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세 번의 개정 의견을 낼 때에는 일시체류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 거주자를……

○김기현 위원 복잡한 설명 마시고, 오늘이라도 제 정당 간에 합의가 되어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서 하자라고 결론이 나면 실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6월 말까지를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봤습니다. 지금 재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보고드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재외국민 등록 등을 봤을 때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열흘 만에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났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그 차이뿐만 아니고, 6월 말까지를 한계로 정해 주셨을 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 보겠다는……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문제 아닙니까? 준비기간이 모자란다는 것인데, 기간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제가 자꾸 이것이 오락가락 한다고 그러느냐 하면 어떤 특정 정파나 혹은 어떤 특정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전혀 그런 것…… 선관위는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열흘 사이에 되고 안 되고 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지금 3개월이라고 그러는데 3개월이 될지 2개월 20일 만에 될지 할 수 있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하겠다는 의사가 없이, 그런 의지가 없이 실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 번이나 국회에다 개정 의견을 내면서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제도를 도입했고, 6월 말까지 마지노선을 제시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가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쪽에서 선관위가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김기현 위원 설명은 계속 그리 하시지만, 지금 필요한 것이 뉴욕, 동경, 오사카 이런 20만 명 넘는 곳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등록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2개월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만 재외국민 등록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더 보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더 단축할 수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에다가 또 명부를 관리하고 운영할 전산 프로그램 개발…… 엊그제 위원님들 지적 계셔서……

○김기현 위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 스케줄 다 봤습니다, 제가 안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9월 10일부터’ 그래 놨는데 딱 9월 10일부터 해야 되는지, 9월 20일부터 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두 달 동안 등록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20만 명이 넘는 곳이 세 군데쯤 되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제일 많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 그곳……

○김기현 위원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군데에다가 시설하고 인력을 좀 더 보강하면 60일 동안 줄 것을 갖다가 50일로 단축할 수도 있고 40일로 단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이 선거는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제도를 바꾸어서 국내에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해외의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서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설명하셔도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눈치를 보면서 지금 적당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밖에는 비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정치관계법특위를 이렇게 구성해서 가동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번 대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공명선거를 확립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는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국책연구소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보도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봤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것이 공명선거를 해치는 발언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내용의 취지를 봤을 때 국가의 각종, 특히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당해 부처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앞으로 국정 방향을 좌우하고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내부 실무적인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료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유출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그 자료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에는 선거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위반 사항이 될 것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거야 국책연구소 말고…… 그런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연구소들이 있고 또 연구기관들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상대 정당에서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도 어떤 일정한 의견을 가지고 비판적인 내용의 검토를 하게 한다면 유출은 두 번째 문제이고 검토

하고 그것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 선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내용의 조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예산을 들여서? 되는 것인지 대답을 해 보십시오.

국가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특정 반대 정당의 모든 정책이나 주장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자료를 생산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주요현안에 대한 검토를……

○김기현 위원 유출 얘기했지. 유출이야 그래 놓고 또 뒤로 슬쩍 유출해 놓고 모른 척 하면 그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유출된 부분에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대처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유출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을 작성하고 생산하는 것이 문제라니까.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재외선거제도 도입 방안 보고를 들어 보니까 선거제도에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국내 선거를 관리하는 데 일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두어서 선거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지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요, 국내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선거관리를 안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선거법에도 많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랄지 아니면 투표용지에 관한 것이라든가 투표함에 관한 것, 모든 절차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선거제도를 죽 연구해 놓으신 것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해당국이나 해당 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우리 국내 선거제도도 투표소는 과거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가 없고 투표관리관을 통해서 실제 투표를 관리하는 사람들로 구성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윤호중 위원 해당 투표소 관리관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명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공관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파견하더라도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파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파견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선거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윤호중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시간이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투표를 중단하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럴 경

우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저희가 그런 걸 다 예비한 편람 지침, 또한 충분한 교육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면 현재 국내 투표소 투표 관리와 크게 안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건 적어도 그 해당 국가의 재외국민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자율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공명선거를 직접 감시하기도 하고 또 선거 투표과정이나 개표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무총장께서는 재외선거제도에 전혀 그런 내용이 불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투표소 운영만 되면 해외 부재자들이 투표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국내 투표소 제도를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군 부재자투표 할 때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세계의 모든 부재자투표소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투표관리관을 전 투표소에다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물론 그 직원을 모두 교육을 잘 시켜서 파견을 하겠습니다만, 그 직원 한 사람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현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그 투표관리관이 그렇게 판단해야 할 사항은 없을, 사무의 절차를 진행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구성해서 판단해야 할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예를 들어서 부재자투표인 명부의 확정, 이런 확정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수집을 해서 확정을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할 것입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선거인명부도 국내에서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봤는데요,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윤호중 위원 그런데 이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것, 이것도 아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는 많은 안정화시키는 과정, 시험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윤호중 위원 물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단지 주민등록에 근거해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부당하다,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히 진보된 결정이고 또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기 위해서도 가장 공정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선거의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재외선거제도 도입 방안이라고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아직 선관위에서 충분히 제도를 완비할 정도로 마련을 못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먼저 정치특별위원회에서 해외 부재자 제도에 대한 법안의 골격을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준비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등록을 받는 데 약 60일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9월 초에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라고 하기에는……

○정진섭 위원 전자투표에 관한 각종 여러 가지 준비, 시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거는 법에 근거해서 하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전자투표 제도는 일단 선거법 278조에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실천방안을 준비를 해서……

○정진섭 위원 전자투표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도입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진섭 위원 이거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봐서는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정진섭 위원 6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정진섭 위원 대한민국에 60억이 없어서 이걸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지금 사무총장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는, 업자들에게 저희가 지난 2차 전체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어봤을 때는 업자들은 개발 및 안정에 7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독촉을 하고, 빨리한다면 3개월 정도에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가……

○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을 믿고…… 아니, 7개월이 된다고 그러면 6월에 입법을 해 줘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6월에 입법을 해 줬으면 됐는데 6월에 입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지금 총장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정진섭 위원 특히 9월에 입법을 하게 되면 이 전산 개발에 필요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그걸 미리 했으면 되는데 입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가나 물어봤더니 60억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정진섭 위원 그 60억이 없어서 재외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투표를 못 한다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그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프로그램 개발도 법안에 대강 골격과 흐름과 방향이 정해졌을 때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는 개발이 잘……

○정진섭 위원 결국 안 하시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시는 거지…… 대한민국 정부가 돈 60억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에 대개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질의서라는 걸 보내셨어요. 이러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질의서를 보내셔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가상 발언문에 대해서 답을 보내는 게 옳지 않다 또는 전례가 없다 해서 아마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진섭 위원 보내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정진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 했더니 그 내용을 공개를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을 안 해 줬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구체적으

로 답변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을……

○정진섭 위원 예,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한나라당이 어떻고, 어떤 후보가 어떻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가상 질의문을 통해 해석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보냈다가 그걸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내용을 공표함으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그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녁때 오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마치고 들어가면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렀다고 하면…… 지금까지 세 번 경고하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두 번.

○정진섭 위원 아, 두 번 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이번 대선 관련해서 두 번 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하고자 하는 뜻인데, 이 선거법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유린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침해한다고 하면 이 논의가 다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실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선거를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비로소 이런 선거법 논의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보도에 보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선주자의 공약을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검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봤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것은 총장께서 보시기에 옳은, 그러니까 소위 공무원의 정치 개입 내지 선거 개입 문제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제가 구체적인 내용, 발언한 의도를…… 그 내용을 보도로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 의도, 발언 취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내부적인 검토의 단계, 검토해서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 운영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취지이고, 그것이 밖으로 유출돼서 특정 후보자의 진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제하는…… 또한 '그래서 연말까지 단속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발언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국책연구기관은 공표하지 않고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두려고 예산을 들여서 그 연구를 합니까? 그거는 공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의도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여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께서 단호한 입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공사 관련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조사시킨 바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0억만 돈을 쓴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갖는다면 법 개정 이전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세의 전환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이 주신 말씀 이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만 가지고서 선거 일정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외선거

인 등록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돼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섭 위원 등록은 60일이면 된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다 됐습니까?

○정진섭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일 위원 양형일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때문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지금 이런저런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시비의 대상이, 시비거리를 야기하는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국책연구소를 통해서 정책의 타당성 이런 것을 검증하겠다,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그건 불법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건 동의를 합니다.

○양형일 위원 지금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 지금 '재외공관장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선거일 전 10일까지의 사이에 공관·문화원 등에 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우편투표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선거일 전 10일 사이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5일간입니다.

(이상배 위원장, 안경률 간사와 사회교대)

○양형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 정치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후보자에게 유고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15일 전이라면. 또 대통령후보로서, 대통령이 될 자로서의 중대한 어떤 결격사유 같은 게 드러났을 경우에 이미 투표는 종료돼 버렸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마 부재자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대통령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서도,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후보자를 지지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형일 위원 아니, 참정권과 투표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여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형일 위원 아니, 정당에 대한 투표의 성격이 강한 면을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양형일 위원 그래도 대통령선거에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후보자를 당연히 염두에 두고서 투표할 것입니다.

○양형일 위원 오히려 총선의 경우에는 정당이 지니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대통령선거는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보에 대한 평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형일 위원 그러는데 선거일 전 15일부터 선거일 전 10일 사이에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중대한 어떤 결함이 발견되어진다면 사실상 투표권을 부여한 그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기간은 저희가 국내 투표처럼 기간을 선거일 전 15일부터 한 열흘 정도 줄 수 없는 것이 그 10일간에, 현재 투표용지가 훼손되는 기간을 생각할 때 저희가 5일밖에 부여를 못 하겠어서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일정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양형일 위원 글쎄요,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투표지를 갖다가 외교파우치를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은…… 선거일 전 15일, 10일, 외교파우치로 다시 보내오고 이런 방법은 조금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논의해 주셔야겠지만 시간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해외에서 투표하는 시간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쪽 방

법이 제일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쪽 방법을 택했습니다.

○양형일 위원 투표권을 줄 바에야 믿고 투표권을 주고 거기에서 개표해서 개표 결과를 송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형일 위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포사회를 보면 교포사회 내 시민권자, LA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LA의 예를 들어 보십시다. 거기에 있는 교포들 중의 상당수 분은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교포 사이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국내법은 어떤 효력도 미치지 않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양형일 위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포사회에 시민권자들도 같이 어울려 살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그 개연성은 매우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러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개인적으로는 국내에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양형일 위원 그러면 정당은 정당의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법상 해외에 정당의 사무소를 두는 부분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된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형일 위원 이것은 단순히 투표권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 진실로 투표권,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의 행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접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래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률 간사, 이상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형일 위원 조금 전에 보고를 들으니까 일본이 시행하기 2년 전에 입법을 해 가지고 준비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개정의견을 제출했고, 그리고 재외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까지 2006년에는 하셨다는 이런 보고가 있는데 선거에서 투표권이 주어질 것에 대비해서 아마 이게 있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봤습니다.

○양형일 위원 '교포사회에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하는 홍보활동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형일 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이상배 예.

○양형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간사님이 계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다음 지병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병문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서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당락이 100만 표 이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외국의 경우에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보면 내각책임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제지만 선거제도가 우리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또는 외국에 가서 10년, 15년씩 영주권을 얻어서 사시는 분들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285만 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 보면 국외부재자 투표 도입에 관한 재외국민 여론조사 이거거든.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문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것은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지

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내에 거주하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이 문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걸 조사할 필요가 있지요.

이분들은 사실 투표권이 주어졌을 경우에 투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피해 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히 높은 찬성률을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외부재자투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그 당사자인 재외국민들에게만 하는 것은 당연히 70%, 80%의 찬성률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병문 위원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당에 유리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세상은 자꾸 변하는 것이고, 또 투표는 국내에서 얻는 투표율이나 국외에서 얻는 투표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비율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면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285만 명의 국외 국민이 대통령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3년이랄지 5년이랄지 10년이랄지 횟수를 제한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병문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느냐면, 도입을 하자, 무조건 도입한다, 아무 조건 없이 한다, 그런데 시간만 문제다, 시간만 주면 하겠다, 이게 국민적 합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내의 이런 정황, 분위기 이런 것을 다 전부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벌써 결정을 해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지병문 위원 아니,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볼 때 5년이랄지 10년이랄지를 제한을 하면 우리가 헌법을 고쳐서라도 그러면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엊그제도 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님 말씀도 이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병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저런 모든 정황,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여하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헌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했을 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헌재에서 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선관위가 좀더 여러 제도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지적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이번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병문 위원 주로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완전국민경선제, 정당에서 당내 후보를 정할 때 당원이나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후보 결정할 투표권을 주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는 법제를 마련할 때까지는 현행 국민참여경선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완전국민참여경선제가 된다 할지라도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한 방법이라면 정당의 고유성은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참여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법안을 내놓은, 예를 들면 이인영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사무총장께서 모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알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지금 그 법안에서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병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

는 그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번 특위에서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지병문 위원 선관위가 어떤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서 어떤 것은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정치적인……

○지병문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찬성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저희도 인터넷 선거운동은 보다 더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아마 선관위에도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소위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무효로 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병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랄지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선거운동 하고 범법행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지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이상배 다음 질의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8항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계진 의원 안하고 제146항 정치자금법 개정안 박찬숙 의원 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해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관련 법안 개정안과 같이 심사하기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 법안은 의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주민등록 말소자의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때도 보면 이제 우리가 선거인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선거권 부여의 전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선거인명부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주거 파악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선거권이 부여되는 그런 제도가 이번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부재자 제도 같은 경우는 호적을 근거로 한 명부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박세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지금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동원하는 여러 가지 논리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래서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외선거인제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명부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세환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이게 선거인명부를 어떤 선거권 부여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에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느끼면서 보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선거권 침해 문제는 우리 선관위에서는 전혀 해결할 방안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가지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방안……

○박세환 위원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국민들 앞에 '이것은 어떻게 지금 말소자들한테 줄 거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말소 당시까지 있었던 주민등록지에다가…… 이것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에 임박해서 말소된 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신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현실적인 그런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뭐냐 하면 그런 것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건 고려하지 말고, 어떤 권리 부여의 선언은 해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

○박세환 위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왜 선거권 부여의 가능성을 그렇게 차단해 놓고 있느냐?' 이런 것하고,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무슨 소리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힘든 사람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거인명부라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선거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 제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그것 검토가 안 되면 국내에 있는 선거인들한테 전부 다 선거권 안 줄 겁니까? 그런 논리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박세환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고 구멍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국내에 있는 선거인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선거권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동원하는 논리 그대로 좇으면 그런 식의 결론에 귀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하고 이것은 너무 비약이 아닌가……

○박세환 위원 뭐가 비약이에요? 그것을 비약이라고 느끼지요? 저는 선관위에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이고 그런 것인데……

이게 또 의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대통령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참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번에 안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을 또 참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1년, 2년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5년을 또 참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번에 법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내년에 총선 때……

○박세환 위원 그러니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열흘 나그네가 하루 못 참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재외국민들의 그런 절절한 어떤 참정권에 대한 여망 이런 것을 자꾸 왜 현실적인 여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즉, 내가 보기에는 깔아뭉개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위원님.

○박세환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인명부와 관련한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겠지만 우리 선관위가 봤을 때에는 말소된 분들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가졌던 그 주소지에 등록을 하도록, 선거 때 가서 부재자신고를 하듯이 선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박세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선거권 주지 못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또 다른 장벽을 설정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뭘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용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서 죽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올해 12월 선거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네요.

첫 번째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등록신청 업무가 과다하고, 그다음에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권 유무 확인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보급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큰 문제는 그 두 가지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60년대하고 70년대 초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한시적으로 월남 파병 군인들 중심, 독일 광부로 나가 있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런 분들에게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성영 위원 어쨌든 재외국민에 대해서 그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도 투표권을 줬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주성영 위원 그런 실시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97만여 명이.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데 그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는……

○주성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서 지금 등록명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95만 정도가 일단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주성영 위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전제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200만 명, 300만 명이 재외국민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국민들 전부 다 대상으로 등록기간을 주고 어떤 등록방법을 동원해서 등록을 받아서 해야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서 97만여 명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첫술 밥에 배부르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선관위 보고에도 보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의 등록신청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주성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9월 초에 합의 처리해서 통과되면 이 기간이 충족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저희가 시간을 6월 말까지 한계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짰을 때 9월 10일부터 등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 준비가, 지금 법안의 골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하실까요, 저렇게 하실까요', 이런 저런 안을 그냥 검토해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공정성과 최종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할 부분이 아니고 차근차근 짚어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성영 위원 중앙선관위의 오늘 보고서에 보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정하고 있었고, 국회에서의 여러 재외국민 선거에 관한 입법 경향도 파악하고 계셨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여기 보면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9월 말이 되어야 보급

가능하다,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하고 선거권 유무 확인하는 것이 9월 말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오히려 9월 10일부터 그 사이에 같이 이루어져야 겠지요.

○주성영 위원 그것은 재외국민 등록업무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재외선거인 등록이 마무리될 시점에 가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주성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기본으로 하고 또 만약에 9월 초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7월 8월도 가능합니다마는 9월 초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홍보업무와 등록업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내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이런저런 방안을,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한 준비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하면…… 지금 선관위에서 제출한 이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우리가 12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완벽하고 광범위한 선거권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먼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넣어서 재외에 나가 계신 분들 중에 유권자의 90% 정도가 투표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성영 위원 아니, 90%가 찬성한다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해서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그러면 여론조사가 90%가 나오면 90%가 되어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는 겁니다마는, 그리고 9월 10일부터 저희가 선거인 해외부재자신고를 받겠다는 것은 이 앞에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9월 10일까지……

○주성영 위원 우리가 과거에도 재외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의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고 또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헌재의 판결을 예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12월에 재외국민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저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것은 하나만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정의 준비가 동시에 준비되어서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성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안경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률 위원 주성영 위원이 죽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보고 내용을 보고…… 오늘 보고는 내용이 좀 달라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얘기한 보고서는 지난번 보고서, 이번 보고서로 충분한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이, 헌재가 모처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가 존중해서 8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들한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시한이 촉박하다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혹시 어떤 법개정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내부적으로 영이나 규칙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또는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보고를 해라 이랬는데 그런 방안은 쏙 빼 버리고 오늘도 여전히 지난번처럼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 죽 대답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제

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보고서가 그런 방향으로 보고도 되어야 되겠거니와, 적어도 시한이 있는 문제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놓고 시한이 있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 제가 다시 좀 보고를 하라고 그런 건 적어도 우리 선관위에서 대통령선거까지 일자를 고려해 가지고 선거 전에 어떤 로드맵으로 갈 것인가, 우리 참여정부에서 로드맵 좋아하지만, 어떤 로드맵으로 해야 가능하겠는가, 그 일자를 죽 정리해서 적어도 파워포인트 정도 동원해 가지고 여차여차……

선거명부 확인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데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반 문제점들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제가 보건대는 우리 위원들이 오전 내내 죽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연구와 규칙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외교통상부에 어떤 요청을 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가능한 방향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첫째 주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선 재외에, LA 같은 경우에 24만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해서 투표소를 40군데 설치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국내에 투표구 설치할 때 그 기준, 유권자 수가 몇 명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게 한 40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4000명인데, LA에 24만 명인데, 며칠간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40개를 해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

○안경률 위원 지금 논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검사해 보고, 국내의 투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고 또 투표도 어떻게 하면 좀 신속하게 빨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국내법이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육법전서 펴놓고 다시 할 그런 방법이 아니고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그런 큰 전제, 그런 큰 명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투표구 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오후에 다시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날 처음 얘기한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아무 소득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난 전체회의 후에 위원님들이 현안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직접 가능한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올해 대선 도입에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 방안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안경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결론을 선관위만 내지 말고 저희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구두로……

지금 제 머리도 아주 혼란스러운데, 뭔가 정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되고 이렇게 딱딱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납득하지, 선관위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능한데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했을 때……

○안경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선관위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저희들 자문을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지 안 한지……

여기도 다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서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안경률 위원 총장님 혼자서 문제 있다고 그러지만, 그 문제를 여기 내놓고 우리하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자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지금 개념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체계 없이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외교통상부가 어찌하더라 하는 이런 판단은 선관위 자체가 하지 말고 저희들하고도 같이 판단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저희가……

○안경률 위원 그러면 지금 법대로, 선관위 그

런 기준대로 하면 내년에 가서 이거 논의하면 되지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 낭비해 가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검토했을 때 이 방안이 어렵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하여튼 다른 방안이 더 있는지…… 지금까지 고민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안이 더 있다고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률 위원 지금 다른 방안이라는 게 조금 전에 주성영 위원도 얘기했고,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질의를 하고 단축시킬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시고, 선거인명부 하는 데 두 달, 석 달 걸린다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들께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률 위원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하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듣도록 다시 작성을 해서 보고하세요, 오후에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오후에는 기획실에서 모르겠고 다음 기회 때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률 위원 총장님, 지금 '다음 기회에 자료로'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화요일 시간을 이렇게 드릴 때는 오늘 그래도 가능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예산 뒷받침이 있으면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안 되는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왜 오늘 보고합니까? 지난번에 끝내 버리고 말아야지요.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사무총장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한 내용과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한 내용이 좀 엇갈려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국민경선과 관련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위탁관리규칙 속에서 지나치게 제약해서 법에서 보장한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관위가 나름대로 객관성 또 공정성, 독립성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고, 그것을 넘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 저희가 당내 경선을 정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제가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이 시군구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지나치게 제약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구역 위주로 투표소 설치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것 같다, 선관위는 선거구 개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면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위탁관리규칙 중에서, 말하자면 동시투표의 경우만 상정해서 선거인명부의 사전 작성 확정일자를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문제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차투표 내지는 순회투표가 허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선거인명부를 순차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점들을 제가 사례로 들었던 거지요.

그랬는데 그 뒤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럼 그것을 이번에 선관위가 규칙 개정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너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면서 불필요한 정치 논쟁에 휘말려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선거법에서 위탁선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 당내 경선규칙을 그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그 기준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당내 경선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나라당도 당내 경선규칙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관위 입장은 '게임을 앞두고 이 규칙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는 똑같은 룰로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뭐 하러 정치관계법특위가 열립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합의가 있고 법 개정이나 혹은 법의 정신에 맞는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제기되면 서로가 그런 합의 속에서 이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셨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자체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합의되지 않은 것을 개정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선관위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일간지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하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보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범여권 오픈 프라이머리 물 건너가”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행 국민경선 법조항이나 규칙조항에 의해서도 2002년도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질이나 양으로도 확대된 또 진전된 이런 프라이머리가 명백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국민참여경선을 폭넓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내에서.

○이인영 위원 2002년도보다도 법적인 보호를 훨씬 더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선관위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범여권 오픈 프라이머리 물 건너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여기저기서 혼선이 야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중치 않으셨다, 정치적인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때로는 역으로 정치권 논리에 휘말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가 이 문제까지 야기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은 선관위를 비판하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경선관리규칙 중에서 말하자면 제가 지적한 것 말고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저는 그냥 사례로써 들었던 것뿐이고, 심지어 시군구로 투표소 설치를 제한한 문제들 때문에 한나라당조차도 읍면동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제약을 받았던, 제가 일부러 그 사례를 든 겁니다, 특정한 어떤 정치적 편견 없이 이 문제는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모두…… 모든 부분에서 경선관리규칙의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위탁관리규정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두 조항 정도 예시됐던 부분들이 경선관리규칙 개정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물 건너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의 법제도적인 어떤 규칙상의 규정만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선관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명료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모든 경기할 때 같은 룰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오후에는……

○이인영 위원 저 역시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보완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경선 끝난 후에 제도를 보완해서 앞으로의 제도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 올렸던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이번에 끝나고 개정할 사안도 있고, 이번에 급해서 개정할 사안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예비후보 규정만 있고 본 후보에 대한 어떤 후원금 규정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급하니까 우리가 합의해 가지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질의했을 때 선관위도 ‘그것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나고 규정을 고치고 그럽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타당하면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정치자금법도 손 안 대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영역을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뒤에 이러저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심지어는 언론의 곡해된 보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언론에서 기사를 뽑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 A정당은 이 법으로 하라고 그러고 B정당 때 그것을 바꿨을 때 이것은 그 정당을 위해서 법을 바꾼 것으로밖에 저희가……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들로서 제가 제기한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부재자투표 문제들도 정치적 합의가 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선관위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요.

선관위는 지금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동일한 질의를 했을 때는 왜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대답하느냔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을 정치적 고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룰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인영 위원 어쨌든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자꾸 하면, 뒤에 다른 분들이 질의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사무총장님 대답하시는 것하고, 제가 백날 해봐야 그렇게 또 말씀하실 텐데, 그것 말고 그 뒤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해진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현행 국민참여경선방안 중에서도, 그 법 범위 내에서도 2002년도보다는 훨씬 폭넓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마지막으로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어쨌든 완벽하게 이번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들을 투표에 참여를 시켜보고자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신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런 취지입니다.

○張倫碩 委員 검토를 해 보니까 결론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재외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총장님은 완벽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張倫碩 委員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원래 그렇잖아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도 있는 것이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국민들, 또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 재외국민들 그 소망을 어쨌든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소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 내놓으신 일정표도 제가 받아 보니까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다음 일정대로 소화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또 받아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적어도 9월 10일부터……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9월 10일이 아니라 한 10월 10일, 한 60일 정도 전에만 등록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선관위 총장께서는 9월 10일부터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면 9월 10일이라고 그래도 두 달 남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60일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6월 말일까지 입법이 됐더라면 이제 이 일정이 가능했겠다, 지금 그런 생각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張倫碩 委員 그런데 이제 열흘 지났단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그럼 열흘 지난 시점에서 법이 안 됐으니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것은 조금 무책임하거나 소극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안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헌재의 결정이나 재외국민·동포들의 소망을 감안하면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입법은 우리가 여야 간에 합의만 되면 7월 임시국회 소집해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9월 10일부터, 저는 한 10월부터 등록받으면 된다고 보는데 9월 10일부터 등록신청을 받는 그런 일정에 따른 준비를 선관위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 선관위에서 대통령선거 전자투표하겠다고 예산까지 신청해 왔잖아요, 법에 근거 없는 것. 그 의지,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지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서, 오늘 이렇게 보고서를 써 가지고 왔으니 방법은 없고 국회에서 9월 10일, 9월 10일 등록받는 거니까 9월 10일까지 입법만 해 주신다면 우리는 9월 10일 등록을 받아서 이번 대선에 재외국민들이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어서……

○張倫碩 委員 그 얘기를 못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張倫碩 委員 총장님,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관련부처와 관계를 같이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張倫碩 委員 여야 간에, 정파 간에 여기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논의를 해 가지고 선거법 중에 개정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소위 열어 가지고 우선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조항만 먼저 통과시키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법이 안 돼서 이거 정말로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마시고, 9월 10일 전까지만 통과시켜 주시면—참정권 관련 사항입니다—개정해 주시면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관계부처랑 같이 검토를 다시 한번,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이 문제는 그냥 갈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전부 같이 맞아서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혼자서 일방적으로, 외통부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안경률 위원 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되는 방향으로 짚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해 보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국회에서 8월 말까지만 입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선관위로서는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못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저희 선관위는 당초 2월 말에 이 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9월 10일 일정도 나왔던 것입니다.

○張倫碩 委員 아까 6월 말 얘기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래서 9월 10일 일정이 나왔는데 그 마지노선을 저희가 6월 말까지 한계를 그었던 것입니다.

○張倫碩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저는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거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기체류자, 일시체류자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 영주권자는 점진적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또 윤호중 대변인도 올해 총선에는 단기체류자 먼저 하고 내년 총선부터는 영주권자도 포함시켜서 해 보자 이런 견해를 표명을 했어요. 만약 일시체류자의 경우에 단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준비는 가능한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 저희로서는 일시체류자 부분 검토해서 전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일부를, 헌재 결정이 났다고……

○張倫碩 委員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파에는 일시체류자, 단기체류자를 먼저 하자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서 만약에 한나라당이 좋다고 하면 일시체류자, 단기체류자 먼저 하자 하면

합의되는 거예요.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도 통과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완벽하게 하려니 완벽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 하지 마시고, 일시체류자 정파 간에 합의되고 7월 국회 통과되면 할 수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의지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놀랠 노'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내년 말까지 시한을, 불합치 결정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張倫碩 委員 조금 더 각오를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타국인들에 대해서 재외투표가 시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방선거에……

○張倫碩 委員 아니, 지방선거도 되고 지방선거 아닌 많은 선거에서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세계 98개국이 재외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그 98개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일본……

○張倫碩 委員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없습니다.

○張倫碩 委員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치외법권 또 주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재외선거를 하려면 그 나라하고 원론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이미 재외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면 얼마든지 그 나라와 우리 당국 간에 또 선관위 간에 협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정으로 그 나라와의 협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걸림돌이 안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재외선거를 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재외선거 하겠습니다' 할 때 '하지 마시오' 불편하게 할 나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도 의지만 있으면, 선관위 총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제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서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같이 맞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말씀이 여러 번 계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오늘 점심 자시고 오후에는 좀 적극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많이 자시고 오세요.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릴까 하는데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문제, 외국의 예를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외국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나라의 예를? 예를 들면 부재자 투표, 어느 나라에 보니까 재외국민들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국내에서 부재자 투표 개념을 준용을 합디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투표용지를 보내고 하는데 다만 그냥 보통으로 하면 기간이 안 맞으니까, 요새……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페덱스(FedEx)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니까 바로 오고 이러니까 되던데요.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러면 부재자로 하면 현장의 문제가 없어지고, 또 급히 오는 우편으로 하면 비싸기야 하겠지만 시간 문제는 없어지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 선관위가 당초에 검토했던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것을 오후에 같이 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그 정도 얘기해도 되지요?

○안경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말씀하세요.

○안경률 위원 총장님, 오늘 지금 저희들이 회의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사실은 그게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총장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지만, 그런데 정책

수단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가능한 경우도 있겠고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상정을 해 보면 가능한 경우를 전제해서 여기 죽 나열한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명부 작성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투표·개표 절차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죽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위원님도 아마 비슷한 견해입니다. 가능하도록,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지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해당부처하고 관련부처 말입니다. '협의를 해 왔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외교통상부라든지 행정자치부, 법무부 또는 정보통신부 또 국방부 이렇게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 주고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저희가 13회의 공문을……

○박세환 위원 아니, 그것은 외교통상부만 그렇고 다른 부처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오후에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하다가 잠깐 빼먹은 게……

○위원장 이상배 이인영 위원님, 오후에 계속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인영 위원 다른 분들은 하시게 하고 왜 저는……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이인영 위원님 하세요.

○이인영 위원 지금 선관위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6월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재외국민 부재자투표의 제도적 도입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치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그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것은 외교통상부나 이런 기타 등의 정부 유관 부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쪽 부처에도 많은……

○이인영 위원 실무자들과 아주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판단하신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오후에 해도 되시겠구만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사무총장께서 위원들 질의에 계속해서 좀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지요? 오전 회의 계속해서 말씀하실 사항, 답변하실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재외국민 부재자투표와 관련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상황과 또 관리 여건을 봤을 때 저희는 사실 6월 말까지 모든 제도를 정비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해외 부재자제도를 취급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받아야 하고, 또 해외부재자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운영하고, 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 또한 그것을 파우치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처리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외교통상부의 구체적인 의견을 위원님들이 한번 확인해 주어서 외교통상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그런 가운데 여기 있는 여야 위원들이 그 제도를 도입하기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선관위도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부재자신고 해외제공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의안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1소위 소관 1번 항목에 대해서 오전 중에 선관위 사무총장 보고와 함께 질의와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소위 2번 항목으로 들어가서 2번 항목 선거일의 연기 등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유인물대로 2번 항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1소위 소관에 대해서, 1소위 소관이 8항까지입니다. 1소위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없으면 2소위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당 후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선거일을 연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다른 나라에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예를 기억을 못…… 없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특히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설사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후보가 아니라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의 후보자의 경우는 이렇다, 이게 혹시 헌법의 평등권이나 이런 것에 위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건 교섭단체 정당보다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이런 쪽으로 폭이 넓어지는 것이, 제도를 도입하실 위원들이 결정한다면 그쪽으로 폭을 넓히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위원 그리고 또 수작업 개표를 의무화하자는 그런 개정안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계식 개표를 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투표지분류기를 쓰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분류기를 쓰면서, 그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기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에러 같은 게 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주로 나타나는 것은 투표용지가 들어가면서 투표용지가 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에러사항입니다.

○윤호중 위원 어떤 A후보를 찍은 표가 B후보로 분류가 된다든가 아니면 무효인 표가 유효로 분류된다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에러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경우는 여러 번의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도 자체 점검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끼는 경우가 기계 고장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집계에 영향은 없었다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집계는 결국 거기서 분류된 것을 별도로 꺼내서 저희가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최종 위원장 검표 후에 그걸 별도의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서 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와 집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IT가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라든가 또 전자개표라든가 이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전자투개표 시스템의 도입계획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일단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까지 각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당 대표 경선에도 썼고요.

○윤호중 위원 한나라당에서도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활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당 대표 경선에 썼고 제주지사 경선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우리당은 여러 차례 그 시스템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상

당히 외부로부터 데이터의 유입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개표과정에 데이터칩의 관리를 통해서 투개표에 어떤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줄인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래서 각 투표기마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 우려도 없고 대신 명부관리에 있어서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통합연구시스템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예.

그런데 수개표 작업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투표지분류기를 통해서 하면 개표 자체보다도 처음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원래 투개표 작업에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개표사무원을 사용했는데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밤샘 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밤샘 개표를 차단하고 또 개표할 때 보면 방송국이 그때는 각 개표소마다 방송사별로 사람을 파견해서 계수를 확인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A방송사, B방송사가 똑같은 선거구의 보고내용이 다 달라서 계수가 차이 나서 그 문제로 혼란과 혼선이 오고 또 그 개표가 밤새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개표하는 과정에서의 착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제도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이상 없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오히려 수작업을 했던 과거에 개표 부정이 일어났던 예가 많이 있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오히려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검표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잘못 집계된 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재개표를 법원에서 하는 경우에도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과거에 많이 있던 게 이 투표지분류기를 쓰면서 거의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 수개표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 중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된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하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재선거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재선거의 요건을 규정해 놓으면 사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다음에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선거일 기준 3년 내에 국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선거운동을 제한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에게 전부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역으로 선거법이 시민사회의 발전을 또 제약하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동감입니다.

○윤호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음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대통령선거 과거에 실시된 것을 살펴보면 16대 대통령선거만 하더라도 병풍사건, 기양건설 로비사건, 20만 불 수수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확정은 됐지만 참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수긍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는 벌써 효력이 확정되어 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이런 허위사실에 의해서 표심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선거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청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

요? 어떻습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여러 가지 범죄, 꼭 허위사실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선거법에 녹여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적인 요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총장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마치 법률에다가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법률을 무효화시켜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나라당에서 준비한 법안을 보면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입법적으로 제도를 만드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한계를 그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세환 위원 보세요.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런 기간에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고 또 나중에 가서 그것이 전부 허위다라는 게 다 판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새롭게 좀 규정해서 그런 공표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2시간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고 또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로 결정될 때는 그 공표한 것을 취소하고 또 사실의 보도와 전파를 금지해야 한다 이런 거하고 법원의 권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언론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72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그런 사실, 허위 같은 부분을 판단할 수 없는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선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자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렇지만 현실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당위적인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현실적인 그런 말씀만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저희가 보면 그간에 일어났던 각종 그런 주요사건들이 선거 끝나고도 1년 이상 지나서야 판결 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걸 72시간 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보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적으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수작업을 병행하자'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계적인 어떤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역사적인 면에서도 아주 막중한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심사숙고해서 하자, 아니 대통령선거 개표를 위해서 하룻밤 정도 새고 이러는 것이 그렇게 대수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박세환 위원 아니, 그 후에 여러 가지 개표라든지 이런 걸 둘러싸고서 어떤 다툼이 발생해서 국민들 사이에 그걸 놓고 갈등과 반목이 조장되고 이런다면 이것은 국민적으로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작업에 의한 개표, 집계를 꼭하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여러 가지 합리적……

○박세환 위원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여러 가지 선거과정에서 직접 저희가 그 기계를 사용했었고 그것을 재검과정을 통해서 검증해 봤을 때 그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그러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난 것을 다시 한번 사람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재반복 확인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기존의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도……

○박세환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수작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분류야 어떻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꼭 수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실제 집계 같은 경우는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평

소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박세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했을 때에 대해서, 이것 좀 뭔가 입법적인 불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뭐 예상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간에 어떤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기존에 했던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인지, 후보자재등록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간의 운동만 이어서 하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렇지요. 좀 현실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선병렬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제가 질의보다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선관위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어보면 그중에는 지나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현행법 체계에서 불필요한 어떤 절차나 과정을 상정을 해 놓고 어렵다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은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재외국민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내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간에 이미 대한민국 법체계에 따른 주민등록이 있거나 재외국민등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하다면 현실적으로 누락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미 국가 공부에 다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하다면 지금 선관위에서 보고한 것처럼 굳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지 아니해도 기존의 국가 공부를 가지고 이번 재외참정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선관위에서는 자꾸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선관위가 제시하는 그와 같은 중첩된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도 아주 간편하게 현재의 두 가지 공부를 기초로 하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얼마든지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문가의 견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 증인을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언제 오라고 해서 증인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이미 법정에 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인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전문가들 몇 분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에 좀 의논을 하게 해서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전체회의에서 듣는다면 이런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열망을 좀 성공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재정공술인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배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간사분들께서 회의 진행 중에 좀 협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오전회의 끝나기 전에 사무총장께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방법을 국내에서 하는 부재자투표방식에 준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데 대한 그 의견을 가능하면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답변 가운데 개표 때 '개표분류기를 사용한다' 이랬는데 그전에 '이걸 수작업을 하니까 방송사마다 개표실황 숫자가 나오는데 전부 다른 숫자가 나오니까 혼선이 생긴다' 이 말은 온당치 못한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는 상황을 그때그때 확인을 해 주면 혼란이고 뭐고 있을 수 없는데 방송사의 취재과정은 언론의 경쟁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총장이 무슨 '혼선이 생겨서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아니, 선거관리업무에 혼란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실제적인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과거에 투표지분류기 사용하기 전에는 각 방송사에서 개표소별로 방송요원을 파견해서 개표진행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보도하도록 함에 따라서 각종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바로바로 먼저 보고되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가 공식발표한 개표보다 미리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수치에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가 개표지 나머지 방송사에서 하는 것은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것을 업무에 혼선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님 말뜻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1소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분류한 것이 1항부터 85항까지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85항까지는 일단 대체토론을 마친 것으로 하고……

○張倫碩 委員 1소위 소관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말씀하세요.

○張倫碩 委員 오늘 오전에 보고가 있었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도 여전히 1소위 소관 아주 중요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장님,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거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그리고 또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었던 국민이 해외로 가게 되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게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다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오래전에 일본에 가신 분들은 주민등록법의 시행에 따라 가지고 주민등록을 못 한 분들도 현실적으로는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에 있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해외에 가면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란 말이지요. 그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그러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종전의 주민등록을 기본골격으로, 기본개념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또 주민등록이 있지만 나가 있는 사람을 부재자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관념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가지 공부에 등재가 되어 있다, 주민등록 아니면 재외국민등록.

그래서 참정권 부여는 그 두 공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주되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서 투표하게 하고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서 투표하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동의합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 특히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현재 이 시점에서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좀 장애가 생기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국민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면 논리적으로는 모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게 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다만 재일교포, 오래 가 계신 분들은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으니까 특히 재일동포들은 아마 전원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재외국민등록도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 등록 중에 어떤 하나만 되면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사실만 알게 되면 아마 재외국민등록이 순식간에 이행이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총장님께서는 이걸 어렵게, 아까 보고한 것을 보면 재외국민에 대한 어떤 투표등록을 따로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재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대통령선거에 투표하시려면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내에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재외국민등록을 못 하면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행히 등록을 하게 되면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선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번 일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12월 19일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7월 또는 8월에 입법만 하면 선관위가 준비하는 데는 하등 장애가, 나는 지장이 없다고 보지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그저 완벽하게, 완벽하게 '모든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고, 이게 시간이 짧습니다' 이런 입장을 자꾸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7, 8월에라도, 하여튼 지금 입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을 하면 그런 기본 스탠스에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게 이번 대통령선거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기조 위에서는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만 법을 개정해 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투표용지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張倫碩 委員 물론 그런 과정은 빨리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결국은……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지 사전준비과정을 제가 30일 이상, 심지어는 한 60일 이상 절약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만 준비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해외 부재자가……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한 9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그중에는 단기체류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께서는 '300만 재외국민한테 빠짐없이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니 이거 완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현재 재외국민등록된 90여만 명에 대해서 참정권을 확보해 주면 재외국민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재외등록된 90만 명을 기준으로 하되 빨리 등록하시는 재외국민을 포함해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참정권을 좀 구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명부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실제적으로 재외국민들의 등록을 받고 부재자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 280만 명이 다 등록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張倫碩 委員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선관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현재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는 90만 명의 재외동포,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우선…… 그러면 가능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명부 쪽은 위원님 말씀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현지의 투표소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물리적인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지, 명부만 달랑하면 위원님 말씀이……

○張倫碩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이 그랬잖아요, 6월 말까지만 법이 되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 게 11일 아닙니까, 10여 일. 제가 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절약해 주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張倫碩 委員 현재 재외등록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사이에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되 안타깝지만 이번에 재외국민등록을 못 한 분들에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참여를 못 한다고 해도 재외국민들이 그렇게 섭섭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모두에 위원장님께

서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에 대한 부재자신고 업무는 국내는 주로 우리 선관위가 처리하지만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받고 부재자신고를 받고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있는 투표지를 모아서 국내로 보내는 거는 주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정황을 파악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9월 10일에 선거인명부를 등록받는 이것을 외통부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선관위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외교부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 보기로 하고, 외교부에서 지금 재외국민등록된 90만 명을 1차적인 이번 참정권 참여대상으로 해서 투표소 설치와 또 투표절차를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예, 그러면 한번 외교부하고 재외국민등록된 95만 명을 기준으로 준비작업이 여하한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우리가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시고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안경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부재자 개념으로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나중에 안 위원 하시고 나서 같이 답변하십시오.

○안경률 위원 총장님, 오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란을 하고 저희들이 또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방법이 없겠는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금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가능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관위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안경률 위원 그 팀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 범위까지 지금 장윤석 위원님께서 안 되면 가능한 범위 내라도 우선 상징적으로 하자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제기를 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거기 투개표절차라든지 투표소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재외국민을 인정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목조목 놓고 같이 의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좀 부르고 현실적으로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그냥 총장님이 '지금 이것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조금 전에 장윤석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안경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사하고도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다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안경률 위원 그리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이버감시팀하고 관련해서 지금 경찰도 사이버수사대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안경률 위원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위법·탈법 이런 형태가 많이 자행이 되고 또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선관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사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관위도 사이버감시단속팀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까지 팀제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50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안경률 위원 어디어디? 지역별로 전부 합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안경률 위원 예를 들면 당협을 기준으로 하면

당협에 사이버팀이 한 사람씩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상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선거가 임박하면 증원이 될 것입니다.

○안경률 위원 언제부터 증원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일 120일 전부터 증원이 됩니다.

○안경률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지역·인원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우선 지역적으로도 사이버 검색을 통해서 허위 사실 공표라든지 비방 문제를 저희가 삭제를 하고 악성적으로 계속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르기 하는 것이 있으면 고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조치도 저희가 전국 포털사이트와 전부 연대를 맺어 가지고 포털사이트와 직접적인 채널을 가지고 위반이 보일 때는 바로 삭제하는 이런 협조체제망도 구성하고 있고 또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위법되는 내용을 올리지 않도록 안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 중앙·지역 공히 다 함께 구비가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경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선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재외선거제도 도입과 관련되어서는 행자위에서 공청회 같은 것 했나요?

○위원장 이상배 글쎄요…… 없었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운영 첫 안을 만들 때 간사 분들이 공청회를 하루쯤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결론은 아직 못 났습니다.

○선병렬 위원 아까 장윤석 위원님이 즉석에서 공술하실 분을 모셔서 공술을 듣자고 했는데 사실 이것 공청회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특별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사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TF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뭐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외교통상부가 제일 중심적인……

○선병렬 위원 그래도 여기 보니까 뭐 정보통신부나 또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물론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참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전체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선병렬 위원 최대한도로 안정성 측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공정성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선병렬 위원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한다고 하고 밀어붙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기관의 성격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모든 절차는 전체 영주권자까지 다 똑같은 절차로 가더라도 다만 지금 한나라당 얘기는 일부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심으로 우선 단계별로, 인원범위를 단계별로 가자 그런 쪽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공관의 실정, 해외 실정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작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쪽 의견도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거의 100%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외교통상부의 견해라고 보면 '재외공관장의 책임하에 단기간의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 공관 외 투표소 운영 등에 대하여 검

토 중이나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재외국민투표권을 주려면 입법정책 차원에서 입법부가 하여튼 무조건 정해 놓고 외교통상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요, 아까 장윤석 위원님 말이나 지난번에 박세환 위원님 말마따나. 입법정책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부가,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강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도록 우리 입법부가 정해 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중앙선관위 가지고…… 중앙선관위원회는 입장을 다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저희 입장은 다 밝혔고요.

하여튼 위원님, 그런 결정 전에 관련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최종 입법적으로 합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선관위원회만 앞에 놓고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할 수 있다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밀어붙이는 것만 갖고 우리 입법부가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처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외교통상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밤을 새워서라도 공청회를 하고 또 찬반,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물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테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입장을 들은 걸로 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마치 한나라당은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주자고 하는 의견이라도 자꾸 내서 재외국민들에게 인심이라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인심이라도 얻자. 그러고 후에 가서는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정치적 공세라도 하자' 이런 취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양당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런 공청회 절차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애들도 아니고 한번 한 말을 갖다가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지금 이틀째 시간 낭비를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좀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관련돼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선병렬 위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문제는 이제 둘째 치고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 물어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똑같이 이 위원회를,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 그 업무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더라고요.

방송위원회 쪽은 '그냥 현행대로 하자', 왜냐면 방송위원회의 고유 업무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업무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의 모니터 요원을 놓고 모니터를 한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매체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채널이 한 400개가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정한 선거방송심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하나, 재보궐선거 시에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의 심의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위원회 또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하여튼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보

도심의위원회를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통합한다고 꼭 고집하시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니요, 어느 기관에 모아져도 한 곳으로는 가야 하는데 저희로 봐서는 선거 관련해서 공정성·위법성 판단은 선관위가 제일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둔다면 통합해서 선관위에 상설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선병렬 위원 이 문제는 소위에서 각 기관을 좀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선병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5항까지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의결은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제2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125항까지입니다.

그전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장윤석 위원께서 "재정공술인 신청" 이런 발언을 하시고 또 양 간사 분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선병렬 위원도 말씀하시고 해서 공청회를 하루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그 내용은 간사 간에 좀 집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에 공청회 주제를 한 2~3개씩 중요한 안건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 2개씩 정도로 집약한다든가 1개씩 한다든가 그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이것을 내주 초에……

○안경률 위원 18일 수요일……

○위원장 이상배 18일이 돼요? 그러면 간사 분들 계시니까 저쪽 양형일 간사, 이해를 하시겠지요? 지병문 위원님도 그렇게 맡겨 주시면 그렇게 할까요, 공청회를?

○지병문 위원 간사들이 합의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다음주 수요일 18일 하루 공청회를, 우리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제2소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총장께서 부재자에 준해서 어떻다, 그것 설명을 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방안이 당초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했던 방안입니다. 다만 그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국내 부재자처럼 우편으로 신고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해서 또 우편으로 보내는 것 이런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6월 들어오면서 여야에서 검토하면서 장기 체류자들, 장기 영주권자들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숫자라든지 우편물의 수송 이런 시간을 봤을 때 공관을 중심으로 투표하자는 이런 의견으로 가고, 공관 투표와 투표소 투표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하신 방법은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하고 우편으로 투표용지 보내주고 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배달의 속도가 굉장히 차등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관 투표 쪽으로 방향을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윤호중 위원 준비가 덜 됐으면 아까 보충질의 신청을 했었는데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요.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분명히 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선관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하자' 이런 거고요. 장윤석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일반 투표처럼 부재자투표 신고를 받지 않고 그대로 투표소에 와서 바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 지금 그런 말

씀을 하신 것 같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재외국민등록을 기존에 등록된 걸로 확인하고 그중에서 부재자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등록되신 분 중에서는 자유롭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서 명부 작성 부분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명부 작성뿐만 아니라 부재자투표방식이 아닌 일반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표를 하면 준비기간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인데 일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면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생활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줘야 하는 의무가 또 함께 선관위에 부과가 된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해 오던 것하고는 또 투표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께서는 계속 부재자투표 방식을 말씀을 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기존에 등록된 명부를 존중을 하고, 하면서 추가로 더 등록을 받자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제가 이해한 것은 일반투표방식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거기에서 일반투표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선거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투표 의사를 가진 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투표소 설치에 상당히 혼선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첫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선관위의 재외국민투표제도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재외국민이 다시 국내에 귀국을 해서 70일 이상 거주할 때는 재외국민 거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외국민 거소 신고를 한 분들에게는 국내에서 어떻게 선거권을 줄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해외에서 부재자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선거권을 행사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해외에서 부재자 선거를 하면 되고요. 해외에 거주하다가 다시 귀국해서 일시 국내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분들은 국내 거소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윤호중 위원 예, 거소 신고…… 그러니까 그게 명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달라져야 합니다.

○윤호중 위원 주민등록부가 있고 해외국민등록원부가 있고 그다음에 재외국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국내 거소 신고한……

○윤호중 위원 국내거소 신고명부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한 명부관리를 다 해서 국내에 재입국하신 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더 얹는다고 그러면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분들, 이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명부도 같이 하나가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부재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선거인 명부제도부터 근본적으로 손이 봐져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

147. 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10분)

○위원장 이상배 자꾸 위원장이 보고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1차 회의 때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소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분들과 협의한 결과 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1소위원회 공직선거법제2소위원회 및 정당법·정치자금법소위원회로 하고요.

공직선거법제1소위원회의 정수는 7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으로는 안경률 위원을, 또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윤석 위원, 주성영 위원, 김현미 위원, 최규성 위원, 최인기 위원, 지병문 위원이, 그리고 공직선거법제2소위원회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윤호중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정훈 위원, 박세환 위원, 나경원 위원, 선병렬 위원, 노회찬 위원, 이인영 위원이, 또 정당법·정치자금법소위원회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양형일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현 위원, 정진섭 위원, 민병두 위원…… '정진섭' 위원하고 '정진석' 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이 각각 소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정진섭 위원님!

○정진섭 위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를 하는 것까지 결정된 것으로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되지만 아까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60억이 든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사항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제가 그 사이에 잠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하고 말씀을 나눠 봤더니 '그러면 우리 재외동포 분들이 이 60억을 마련해서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을 테니까 법이 통과되면 중앙선관위가 60억에 이것을 인수해 가겠느냐?' 하는 의사를 좀 타진해 달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국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초과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아니, 교민들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할 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회계 절차가……

○정진섭 위원 돈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면 그 문제를 그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의지가 없다고 보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을 또 따라야 될 부분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각 부처와의 교류가 되는 호환성 문제 이런 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저희가 검토를 하고 틀을 짜 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정진섭 위원 공청회 할 때 더 얘기를 나눠 보기로 하고 우선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제2소위 법안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해서 선관위가 네 차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세 차례 준수 요청을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나경원 위원 준수 요청을 하셨고, 어제 보니

까 청와대가 선관위 질의서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선관위가 조금 전에 다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나경원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 결과만 언론에서 보았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제가 밖에 나와서 전화로 오전에 검토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언론의 공개 요청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공개 요청에 의해서 당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다 게시해 놓은 소극적인 게시 그 상태가 선거운동을 겨냥하거나 또 아니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다기보다는 언론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게시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나경원 위원 언론의 요구라는 이유인데 ‘언론의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언론의 요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언론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이 공개한다’ 하고 선관위 질의서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청와대가 선관위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서 그리고 그 질의서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청와대가 또 다시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또 다시 이렇게 공개를 한다 해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앞으로 일어날 일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라든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벌칙조항을 집어넣어야 된다, 신설해야 된다, 이런 개정안을 넣어 놓고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봐주기 식의 결정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계속 해서 소신껏 발언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래도 역시 준수 요청을 하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앞으로 발생된 사례가 있으면 검토를 하고 그것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오늘 선관위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지금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재 요청 때문에 부득이 공개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취재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지금 정치관계법 중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법들을 고치자, 이게 특위 구성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오늘 계속 하는 얘기가 재외국민 부분 또 대통령 발언 부분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가 재외국민 선거 관련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선관위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고 법안 내용을 우리가 좀 빨리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법안을 만드시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거일까지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까지 고려하셔서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통과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병문 위원 대통령 발언 부분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러면 한나라당이 좋아하고 선거법 위반이 없다고 그러면 선관위가 중립이 아니라고 그러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

적으로 하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정말 합리적으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견해와 또 이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관위는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꿋꿋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병문 위원 우리 투표율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우대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사실은 투표를 의무화해 가지고 한달지 또는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준달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선관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로는 저희가 법안에도 제출을, 개정에도 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의견입니다.

○지병문 위원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박물관이라든지 국립공원 출입 또한 지하철 이용 이런 것에 할인제도를 주거나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에 할인제도를 주는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투표참여율을 높이자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런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투표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은행대출을 받는 데 불이익을 준달지, 다른 나라들도 그거 하거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우리는 그거 하면 또 큰일 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전에 선관위가 투표하지 않은 분들에게 5000원씩 과태료 물게 하자는 네거티브적인 안을 제안했다가 많은 공격과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공격 받으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포지티브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병문 위원 후원회하고 관련해서요, 후원금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소위 지금 현재는 연간 120만 원 이상 후원금 낸 분들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에서는 300만 원 이상 고액자만 공개하도록 하자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우선 평가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후원회 회계보고를 보면 120만 원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300만 원 이상 내는 분은 아주 소수의 분들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 정도가 되면 소수 인원이 낼 정도로 금액이 좀 높다고 봐서 상향으로 조정해서 공개하도록 그래서 소액 120만 원 이렇게 내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지병문 위원 그게 공개되기 때문에, 120만 원을 후원금 냈을 경우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는 후원자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나는 없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많다고 또 지적을 하시고……

○지병문 위원 나한테 그것 불편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누구한테 낸 게 120만 원이 공개되면 또 다른 분은 서로 친한데 나는 안 내고 왜 저 사람에게만 냈느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병문 위원 지금 현재 후원회 제도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마 위원님들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나 선관위에서 어떤 근거로 그것을 했냐고,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의견도 수렴했고 또 120만 원으로 하다 보니 의원

님들의 모금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원활한 모금과 도 공개액도 현실화시키고……

○지병문 위원 모금에 지장이 없더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은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병문 위원 우리가 심의하면서 논의하겠지만 실제로 100만 원 이상 그것을 공개한다고 그래서 요즘 과거에 박정희·전두환 시절처럼 솔직히 야당 의원을 지원하면 불이익을 준달지 우리 사회가 그 정도도 아니고, 200만 원 이상이냐 300만 원 이상이냐 그 액수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120만 원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리자는 발상이 현재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보면 별로 맞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대상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모금을 내는 분들이, 후원금을 내는 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양면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지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통합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예산 302억이 전액 삭감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통합선거인 명부작성시스템이 돼 있었으면 재외국민 등록 이런 것도 좀 편리하게 시급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준비된다고 그러면 전국적인 통합명부를 통해서 어디 가도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보다 더 많이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병렬 위원 작년에 이 302억이 왜 삭감됐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 마지막 정리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면 투개표시스템 개선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올해도 예산을 예산처에 다시 요구할 것입니다.

○선병렬 위원 작년에 한나라당 간사이신 권경석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예결위 최종 타결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선병렬 위원 행자위에서는 조정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렸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30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거라도 잘해 놨더라면……

사실 중앙선거위원회가 하기는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주자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게 무산됐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외국민에게 투표를 줄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 봐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때 상황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금년에는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한나라당에서 재외 부재자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돼서 지금 우리당의 이인영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있는 국민참여 경선 방안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병렬 위원 이것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정하기는 일정상 좀 어렵다고 보고 현행법에 의해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금년도 예산을 다시 보면 17대 대선 당내 경선 지원금으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12억 6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면 저희 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당내경선을 하면 한 20억이 절약되네, 어쩌네 그런 말이 있는데 예산이 12억밖에 없단 말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12억 6000을 보유했고, 거기에는 아마 당에서 어떤 전산망을 직접 설치하고 이런 비용을 포함하면 20억이 되지만 저희는 기존에 있는 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아마 그런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병렬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확대해서 완전 국민참여경선제도로 명확하게 실시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행하려면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먼저 여야 간에 제도적으로 우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정비되고 제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 규칙에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선병렬 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물리적으로……

○선병렬 위원 물리적으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일까지 마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병렬 위원 의지를 의심당하면서 자꾸 확인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인영 의원안처럼 당내경선제도를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 이런 것은 없으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서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지금 말씀 듣기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만 만들어지면 당내경선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데는 추가로 어려운 점은 없으신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다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미 현행 당내경선과 관련된 법과 규칙을 가지고 지금 한나라당이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정당들의 경선도 같은 경선 룰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면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던 국민경선 방식에다가 약간의 숫자만 더 삽입해서 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숫자만 좀 더 늘려서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 가지고 현행 당내경선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져 있는, 현행 제도가 2002년 때보다는 넓어져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병렬 위원 현행 제도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현행 당내경선과 관련된 위탁선거 부분이……

○선병렬 위원 그러면 이인영 의원 발의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좀 확대해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총장님, 작년에 예결위에서 선관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전자투개표에 관한 예산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지요, 주가 전자투개표 기기 계산 및 명부확인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투개표에 관한 예산이고, 지금 이번에 재외국민과 관련해서 투표를 하겠다는 하는 방식은 투표소를 현지에 설치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중앙선관위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투표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신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투표 전산화와 관련된 예산과 지금 현재 우리 선관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투표방식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선병렬 위원 통합명부 서버 구축비가 있는데?

○위원장 이상배 여러 위원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정당 얘기는 잘 안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끼리 선거법……

○선병렬 위원 얘기를 해야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위원장 이상배 오늘 선병렬 위원 잘 하셨어요. 한나라당도 잘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얘기고……

그러면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 제86항~제125항까지는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26항부터 제146항까지 정당법·정치자금법소위 안건 목록과 관련해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준비하실 동안에…… 나중에 시간되면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병문 위원님하고 여러 분이 개정안을 냈는데, 선거범죄의 후보자 친족 범위인데 여기에 법무부의 의견은 나와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현재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은 여기에 보태 가지고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남성 같으면 장인, 장모고 여성 같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그다음에 '후보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게 법무부의 의견인데 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도 법무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법무부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여러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박세환 위원 저희들은 오늘 1소위 소관 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 왔고요. 나머지 법은 하도 많아 가지고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마침 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하고 여러 분들 나와 계시니까 마감하는 입장에서 소위와 관계없이 질의를 해 주시지요.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난해 11월이나 12월쯤 돼 가지고 재외국민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한번 모의투표를 한 적이 있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모의투표가 아니고 저희가 우편물을 송달했을 때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그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글쎄, 모의투표 비스름했었다던데, 거기에 대한 조사 분석을 다 하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 분석보고서가 다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드리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부와의 협조공문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쯤 주시려고 그래요? 난 좀 오후에 주셨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 보니까, 바로 위원님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내일 중으로 꼭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복사만 하면 되니까 바로 챙겨다 올리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열린우리당의 윤호중 위원입니

다.

선관위에서는 선거일 1년 전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고,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윤호중 위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이라고 하는 게 지난 2004년 법 개정 이후 후원회제도에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허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허용은 과거와 똑같이 법인단체에서 정당에다가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당 쪽의 후원회는 지난해 3월 13일자로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하면 그것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에 따라서 각 정당에 배분해 드리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당이 당비 외에는 특별하게 수입이 없어서 정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윤호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통령선거후보자후원회를 선거일 1년 전부터 하는 것이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선거일 전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비록 선관위의 비지정, 그러니까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이 돈 안 쓰는 선거 분위기 정착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기업들이 보험 차원에서, 정치권에 대한 보험을 의미합니다.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입장이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정당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치자금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판단했을 때 현재 각 정당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자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정당의 현실성을 파악하되, 과거와 같이 부정한 자금이 정당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법인단체는 선관위에 기탁을 하고 선관위는 이것을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통해 나누어줌으로 해서 과거에 특정 정당에만 자금이 몰리던 부분도 해소하면서 모든 정당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활동을 해서 적어도 정당이 빚을 지지 않고 활동을 함으로 해서 검은 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런 제도 받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면 대통령선거의 바람은 선거 있는 해 전해의 한 10월경 되면 벌써 대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대선에 대한 후보자의 후원회는 후보자 개인이 활동하며 쓰는 비용인데 이런 비용을 개인의 부담으로 했을 때에는 여기에 또한 어두운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후원회를 열어주고 그 후원금 씀씀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입지를 가지신 분들이 후원회를 1년 전부터 두는 것, 올해로 친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이렇게 1년 정도 운영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의견 개진하게 됐습니다.

○윤호중 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체 법정 선거상한액의 50%, 70% 이렇게 상당히 과도한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후원회 또는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전체 법정상한액의 5% 이내에서 제한을 하자, 이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6명의 예비후보자가 이미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유력후보자들이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후보들에게 5%라고 해도, 전체 선거 상한액의 5%만 해도, 약 23억 정도의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모금의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혹시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좀더 모금액을 제

한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 저희가 5%를 하자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특히 대통령선거는 정당의 선거입니다. 정당이 비용을 집행하고 쓰는데 이 5%는 입후보 예정자,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 그 비용을 23억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재 60여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또한 후원금 모금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만약의 경우 일부라도 후원회를 둬 가지고 후원금을 모금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그 남은 금액은 전부 국고에다 귀속시키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 있어서 제도가 남용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의사협회라든가 제이유 주수도 회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자금의 제공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여야 모두에게 제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지정기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야 모두에게 선거자금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불법 로비라든가 그런 청탁이 함께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래도 저희 선관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대개 어디어디에서 모였는지, 여러 군데의 법인·단체가 모아준 것을 선관위가 각 정당으로 배분해 준다 그러면 이 법인·단체의 자금은 개인의 활동자금이 아닌 정당운영비로 전부 다 사용되는, 정당으로 저희가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윤호중 위원 선관위에서 그렇게 우려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우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만의 하나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정경유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의 또 다른 어떤 부패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과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는 그걸 선관위에 기탁하게 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배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병문 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은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데 또 국고보조금이 정당에도 배분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국고보조금 가지고 정당이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주요 정당별로 매달 적자가 누적돼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면 각 정당이 제대로, 그 국고보조금을 얼마만큼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선관위가 점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익년도 2월 15일까지 회계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을 전부 보고 과연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그런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지병문 위원 지금은 이제 정치상황이 많이 변해 가지고 정당이 돈 없어서 정치활동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법인이나 단체에 정치자금을 허용하는 경우에…… 사실은 기업이 정치자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 활동하는 분들에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건데 그것을 다시…… 정치인 개개인에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선거범죄 주체의 범위, 지금 법무부 의견도 있다고 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병문 위원 제가 낸 법안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도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다. 이 사람들 아니고도 사실은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와 관계없이 내 돈을 지불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거기에 따르는 형을 살아도 실제로 후보자에게는 영향을 안 주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도의 범위는 후보자와 직접·간접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한다면 이걸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가 내 놓은 안은 이보다는 더 축소가 돼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조금 축소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축소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이건 확대할 수 있는 한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도 법무부안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보면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폭넓게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지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기현	김정훈	김현미	나경원
박세환	선병렬	안경률	양형일
윤호중	이상배	이인영	장윤석
정진섭	주성영	지병문	최규성

○출장 위원(1인)

정진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덕룡 이경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식
기획조정실장	조해주
법제실장	이종우
조사국장	문택규

【보고사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

(2007. 7. 9 이계진·김태년·박상돈·박찬숙·심재덕·유기준·이계경·이재웅·이해봉·정종복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7. 7. 9 박찬숙·서병수·이계진·김영덕·임태희·김석준·김재경·차명진·박순자·안명옥·이종구·장윤석·정청래·민병두·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0일 회부됨